
**특허청의 전문성을 활용한
심사ODA 사업모델 연구 결과**

2024. 11. 5.

**제주대학교 [김인중 교수, 이재현 교수]
목원대학교 [이성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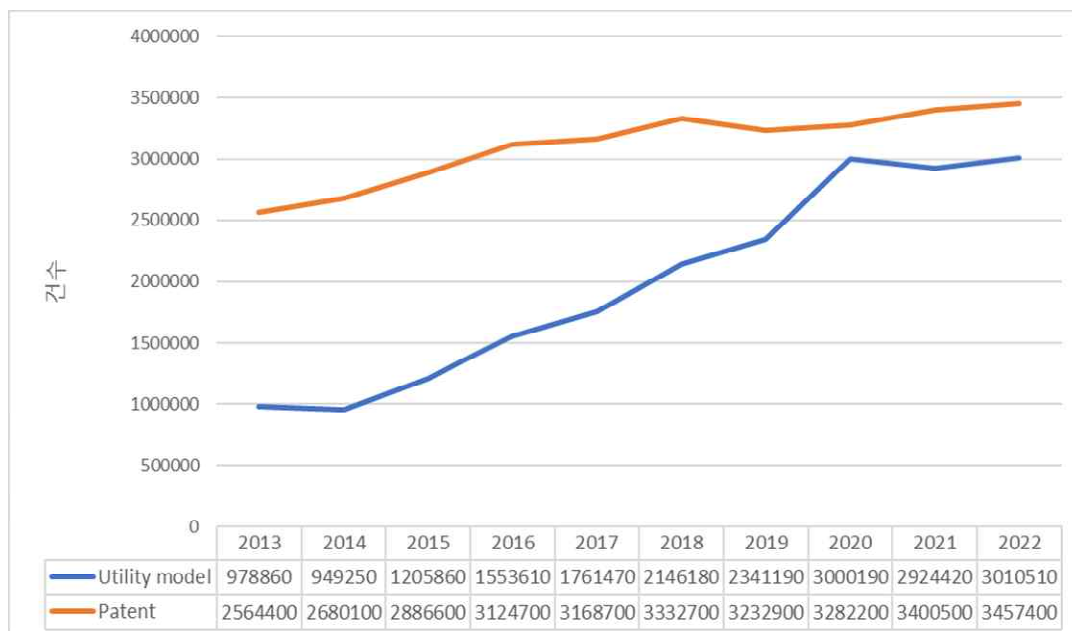
I . 지식재산 ODA 정의	1
II . 지식재산과 SDGs 연계	33
III . 추진내용	35
1. 연구방법론	
2. 심사 ODA 사업 모델 정의	
- 심사oda 개념	
- 심사oda 사업 모델	
3. 심사 ODA 사업 후보군 선정 모델	
- 지식재산 출원유형에 따른 국가 분류	
- 우리 기업 진출유형, 기업수에 따른 국가 분류	
- 개도국 심사 ODA 수요 예측 및 평가 방법	
4. 타부처 사업 연계 방안	79
IV . 해외사례 조사	84
V . 시사점	104

I . 지식재산 ODA 정의

1. 지식재산과 ODA

- 세계 주요국가들은 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양자간 협력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 체계를 통한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선진국(IP5)으로서 전세계의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를 더욱 확대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최근 전세계 국가들의 기술패권이 강화되면서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는 더욱 커지고 있음

<표> 전세계 특허 출원건수



- <표>를 살펴 보면 전체 특허는 10년간 연평균 3%, 실용신안은 연평균 12%의 출원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IP-disparity)는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허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서 저소득 국가(low income countries), 중하소득 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ie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03% → 2018년 1.83% → 2020년 2.13%로 평균 2% 그 비중이 매우 낮음

<표> 특허출원 건수¹⁾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2,215,100	2,251,400	2,386,300	2,239,200	2,311,500
High income	41.42%	40.48%	37.73%	40.20%	37.65%
Upper middle	56.61%	57.42%	60.39%	57.60%	60.19%
lower middle	2.00%	2.10%	1.80%	2.20%	2.10%
low income	0.03%	0.03%	0.03%	0.03%	0.03%

- 지식재산권 창출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Disparity)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창출(권리화)·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식재산 개발협력은 교육, 보건, 농촌개발,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등의 개발협력 분야와 비교하면 개발협력 사업 및 예산 비중이 낮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과학기술혁신, 농촌개발, 에너지 등 다른 개발협력 분야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중장기 전략 방향, 전략 목표, 중점 사업, 개발협력 모델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²⁾
- 이러한 지식재산 개발협력 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 역량을 높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지식재산 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 data.worldbank.org

2) 우리나라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및 제언(2019, 장태미, 한유진)

- 특히 지식재산 개발협력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국(IP5)으로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 중 하나임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 등을 통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음
-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개발협력 중 특허심사 ODA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세부 분야별 목표를 설정, ODA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지식재산 ODA 개념

1) ODA 개념

- ODA란 공적개발원조, 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受援國)의 경제발전·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이 제공하는 각종 공여를 의미
- 국내법상 ODA의 정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 이라고 규정
- ODA의 요건은 OECD의 산하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차관은 양허성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고,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DAC에서 3년마다 발표하는 수원국 목록에 속해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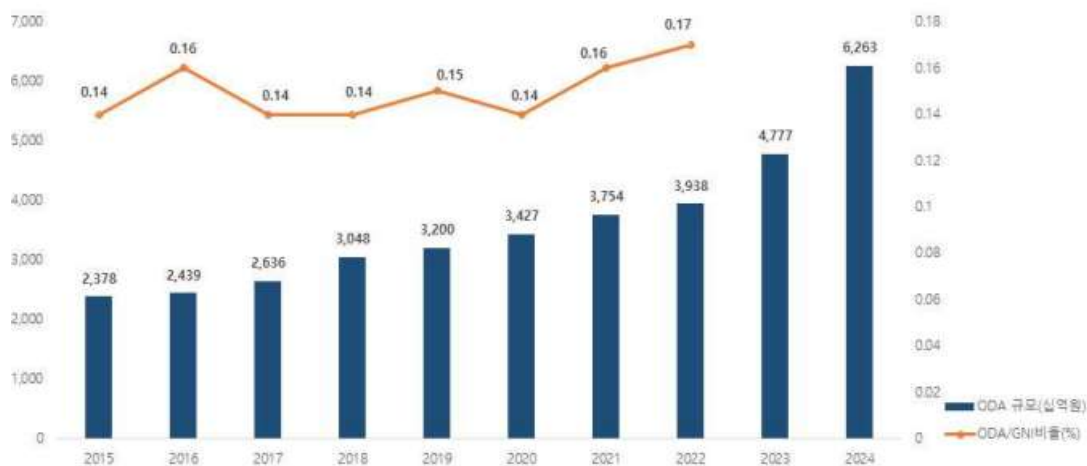
<표> DAC에서 제시한 ODA 정의³⁾

구 분	내 용
공여주체	• 중앙·지방 정부 및 그 실시 기관
공여목적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
증여율	• 양허성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일 것

3)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IP-Divide 해소방안 연구(2013, 특허청)

- DAC 수원국⁴⁾은 최빈국(47개국), 기타 저소득국(2개국), 하위 중소득국(37개국), 상위 중소득국(57개국)으로 구분하며, 기타 저소득국은 1인당 GNI \$1,005 이하이고, 하위 중소득국은 1인당 GNI \$1,006~\$3,955 수준, 상위중소득국은 1인당 GNI \$3,956~\$12,235 이하임
-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OECD DAC의 공식적인 회원국이 되었으며, GNI/ ODA 비율은 0.17%(2023년)이로 DAC 회원국 평균 0.37%의 절반 이하를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여 운영 중
 - * 제3차 기본 계획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 혁신적 ODA, ④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
- 국제협력 사업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24년 국제협력사업 규모는 6조 2,629억원, 46개 기관에서 1,97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한국의 ODA 규모



4) OECD DAC 리스트(2018-2020)

2)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가. 정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또는 개발도상국(개도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도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따라서 ODA는 국제개발협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공적 기관에 의해 공적 재원으로 제공되는 원조를 의미함, 국제개발협력에는 공적개발원조,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 민간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좁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지칭

나. 형태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Bilateral aid)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로 구분됨, 두 가지 방식 모두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여부에 따라 다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

양자원조는 개도국에 직접 제공하는 원조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됨

무상원조는 개도국에 상환 의무 없이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상원조는 개도국에 상환 의무가 있으며, 상업차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상업성이 있는 사업 등의 경제 발전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자금임

다자원조는 국제기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며, 한국은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산하 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다자기구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다. 규모

한국의 ODA 예산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24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6조 2,629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양자 간 원조(81.9%)가 다자간 원조(18.1%)보다 비중이 높으며, 무상원조(60.4%)의 비중이 유상원조(39.6%)보다 높은 추세임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7.5%), 교통(15.1%), 보건(9%) 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1.8%)와 아프리카 지역(18.3%)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연도별 ODA 지원실적>

(단위: 백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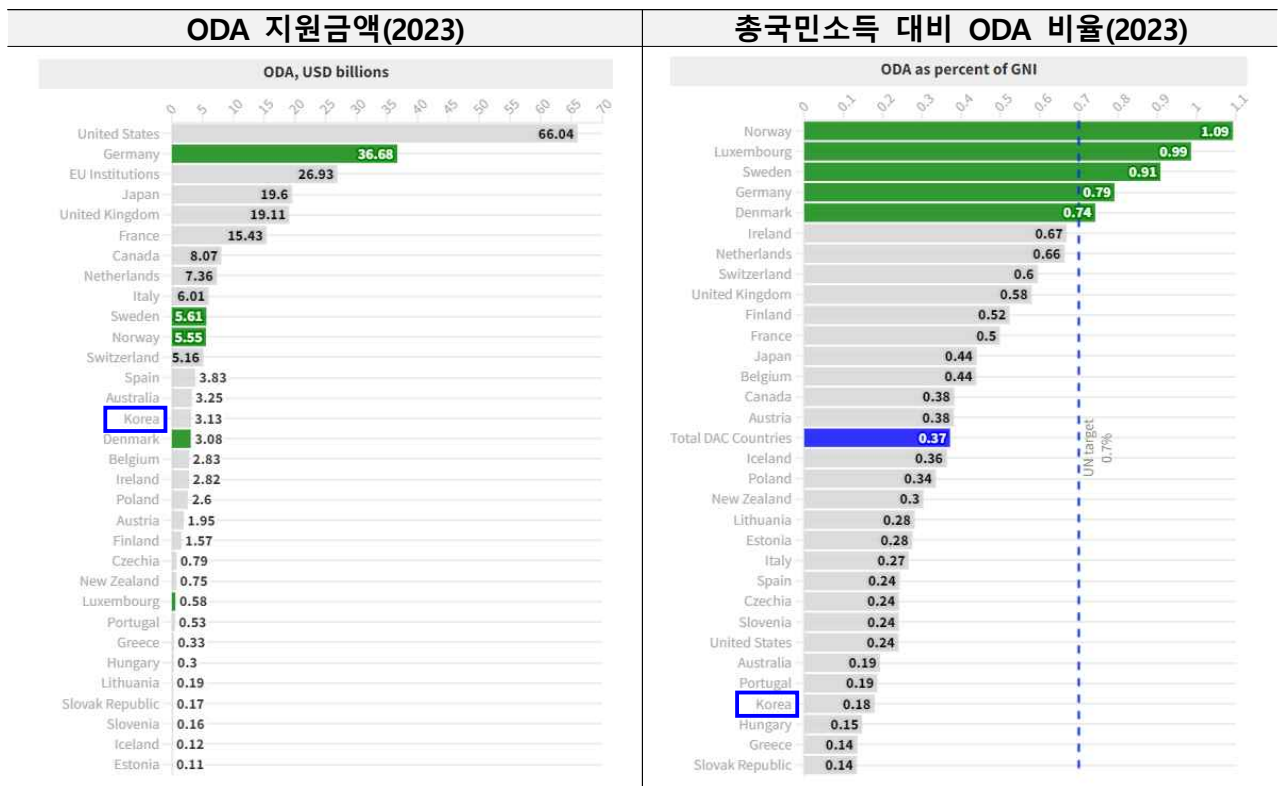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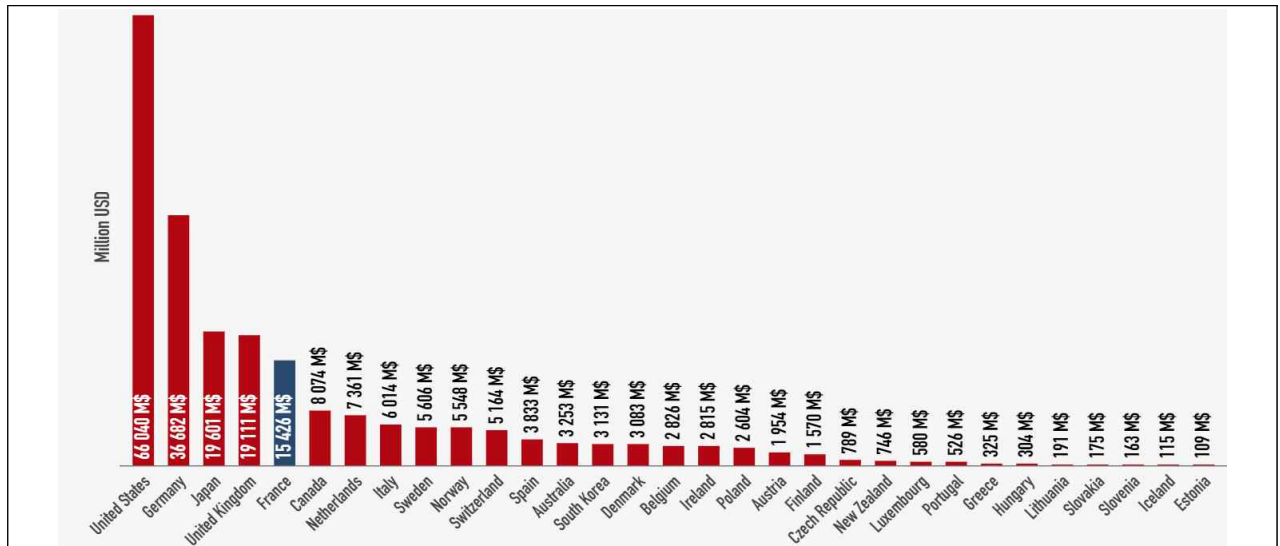


※ 출처: 2024년 국가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금액에 대한 잠정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66,040백만 불을 지원하며 최대 공여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영국 등이 따르고 있음

우리나라의 ODA 지원금액은 3,131백만 불로 추정되어 30개국 중에 14위를 달성, 그러나 총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8%로 전체 DAC 회원국 0.37%의 절반 수준으로 28위를 기록

<ODA 지원금액 순위(2023)>



※ 출처: OECD Flows by donor(2024)

라) 국내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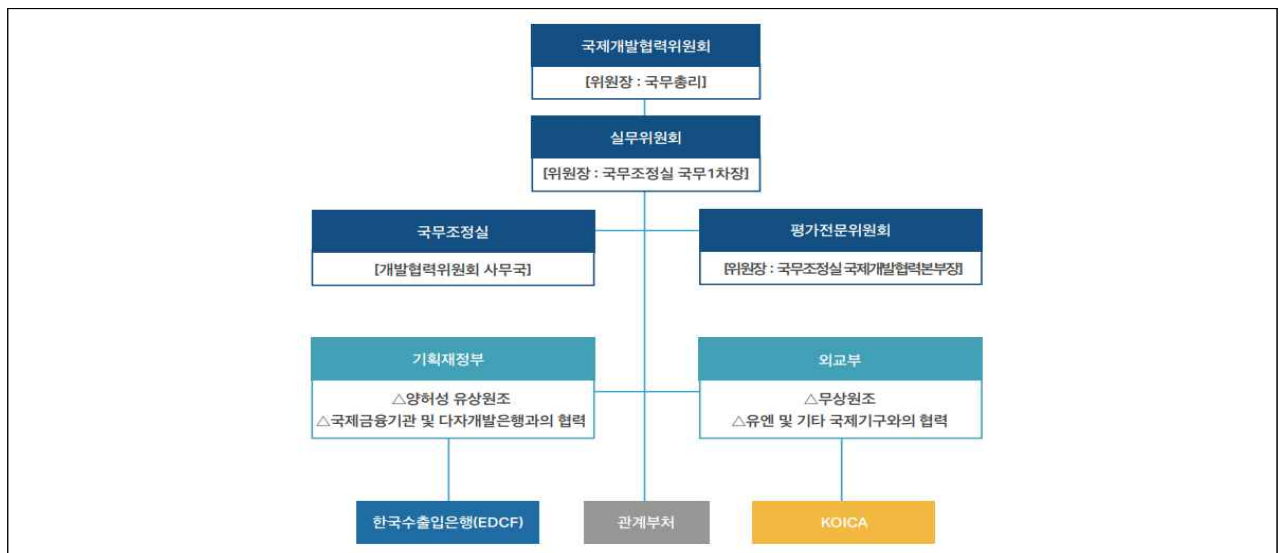
한국의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며, 총괄·조정기관 주관기관 - 시행기관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총괄기관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며, 주관기관으로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있으며, 시행기관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그 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개별 기관이 참여

외교부는 무상원조와 국제금융기구와의 다자원조를 총괄하며 KOICA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 기재부는 유상원조와 UN 및 기타기구와의 다자원조를 총괄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음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ODA 사업 관련하여,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대표 기관인 KOICA와 EDCF의 현황과 ODA 사업발굴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함

<ODA 추진체계>



※ 출처: EDCF 안내 책자(2024)

(1) KOICA

KOICA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1991년 설립 이래 개도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KOICA는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기준 우리나라 전체 ODA의 28.2%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상 ODA의 경우 전체의 62.1%를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조 3,490억원임

<KOICA 무상원조 사업유형>

유형		내용
국별 협력 사업	프로젝트형	•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의 물적협력수단과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수단을 결합한 사업
	개발컨설팅 (DEEP)	• 소프트웨어 및 제도구축 지원에 특화된 사업으로 통상 건축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중 컨설팅,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된 기술협력 중심의 사업
글로벌연수사업		•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HRD) 사업
전문가파견		• 해외봉사단 파견, 자문단 파견 등을 통해 수원국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 사업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개발경험 및 지식,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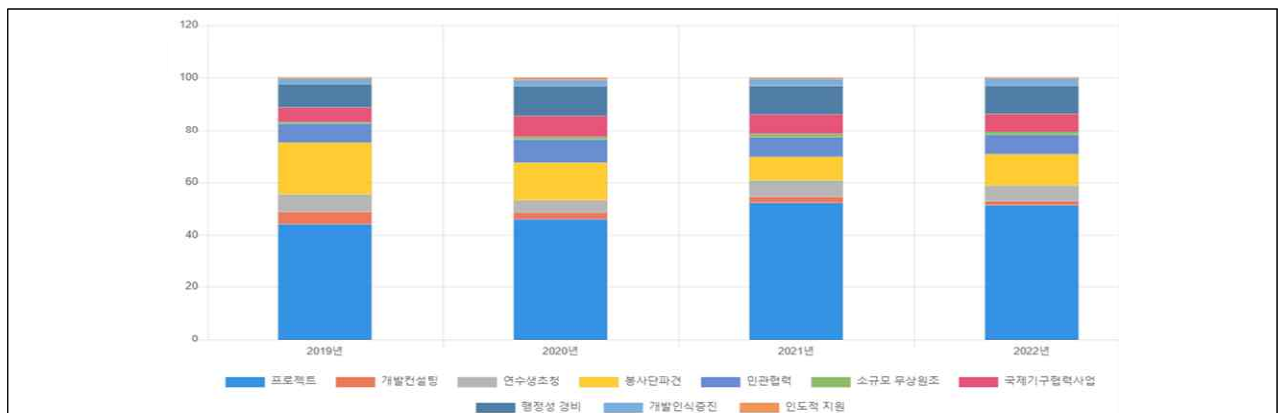
KOICA는 2019년부터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을 국별협력사업으로 통칭하고 있음,

국별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향상 등 특정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물적협력수단(Hardware)과 인적협력수단(Software)을 패키지화하여 약 2~5년 지원하는 다년간 사업임

KOICA는 국별협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정부부처·지자체·공공협력 공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기존에 KOICA는 ODA 분절화 해소 및 정부 대외정책 목표에 부응한다는 취지 하에, 정부부처 제안사업과 공공협력사업이라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 파트너와 함께 국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협력 공모제도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공모제도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부문 고유의 사업영역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기관이 수행까지 책임지는 구조

KOICA의 사업유형별 지원실적을 보면, 국별협력사업이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며, 2021년부터는 국별협력사업이 전체 지원 비중의 50%를 넘어서고 있음

<KOICA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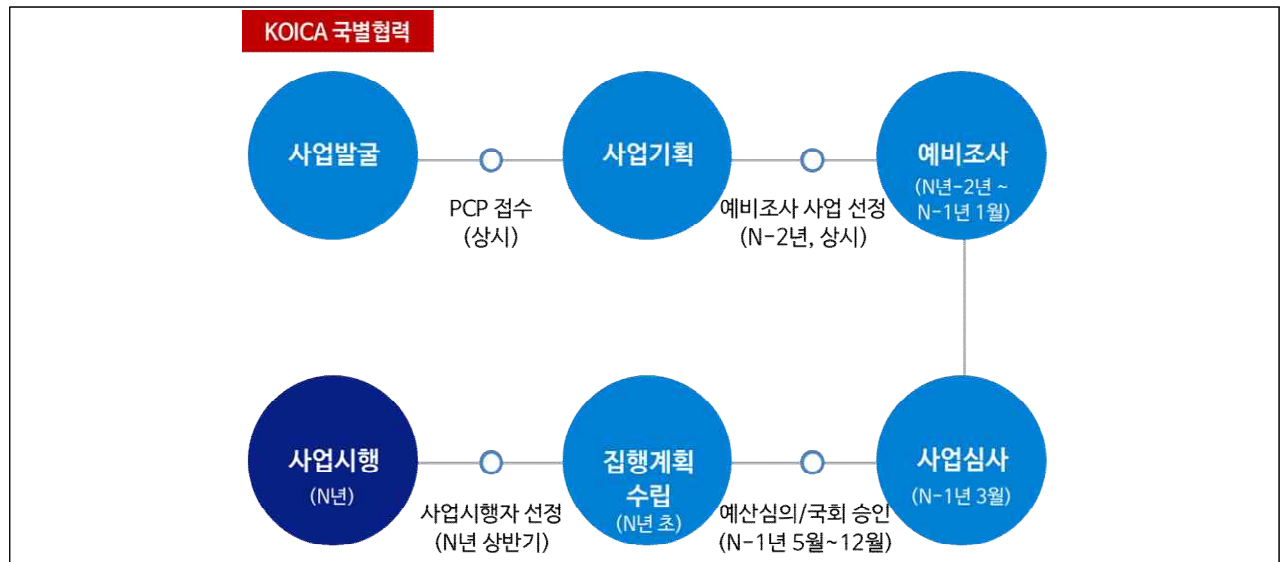


※ 출처: KOICA 홈페이지

㉔ 국별협력사업

국내 ODA 사업은 N-2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 KOICA 국별협력사업 또한 N-2년 체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절차는 사업발굴, 공식 사업요청서 접수, 사업기획, 예비조사, 사업심사, 집행계획 수립, 사업수행자 선정, 사업 시행으로 진행됨

<KOICA 국별협력사업 추진 절차>



- 사업발굴

사업발굴은 재외공관, 사업발굴단, 양국 간 정책대화, 공여국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상회담 및 국제회의 등 각종 주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가능, KOICA에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수원국과 직접 사업을 형성 및 발굴하기도 함

- PCP 접수

수원국과 협의가 이뤄진 사업은 해당국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공식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를 접수해야 하며, PCP는 수원국에서 신규 사업지원을 요청하는 기안서로, PCP 접수는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 현재 KOICA에서는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로 PCP를 신청받고 있음

- 사업기획

KOICA는 N-2년에 접수된 PCP를 검토하며, 지원할 사업을 기획하고 예비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예비조사

PCP 검토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 예비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예비조사를 거쳐야 하며, 예비조사는 사전평가 단계로서 신규 후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함,

타당성 검토는 이해관계자, 사회경제적 배경, 사업 목표 및 내용, 분야별(기술)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평가하며, 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목적 및 성과 목표, 사업내용, 성과관리계획, 연도별 실행 예산 등을 반영한다. 예비조사는 N-2년에서 N-1년 1월 사이에 수행함

- 사업심사

N-1년에는 예비조사를 완료한 사업들을 심사하고, KOICA 내부에서 승인된 사업들은 국회 및 예산 부처로 넘겨 승인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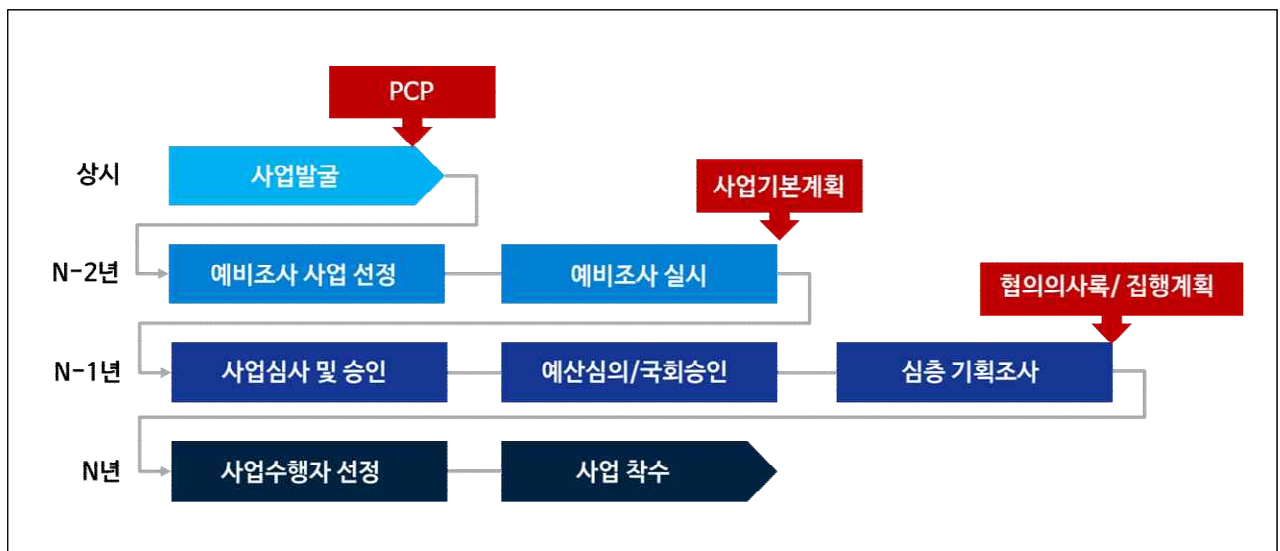
- 집행계획 수립

정부 심의에서 승인된 이후에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N년초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집행계획에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 시행

KOICA는 기획조사를 통해 수립된 집행계획을 토대로 수행기관을 선정 및 입찰 시행하고, 해당 사업은 N년도에 착수함

<KOICA 국별협력사업 시기별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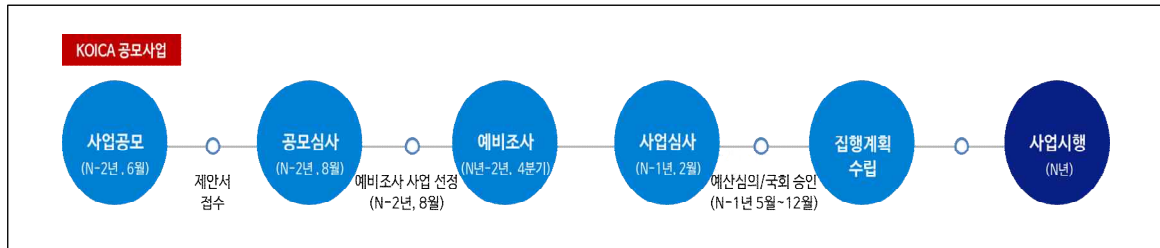


※ 출처: 개발마케팅 연구소

㉔ 정부부처·지자체·공공협력 공모제도

추진 절차는 사업공모, 공모 심사, 예비조사, 사업심사, 집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으로 진행되며, 사업 제안기관이 수행하므로, 별도의 사업자 선정 절차는 요구되지 않음

<KOICA 공모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공모

KOICA 본부에서 N-2년 중순(6월)에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모계획을 공지하며, 공모계획에 따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제안기관은 제안서를 접수함

- 공모 심사

N-2년 8월에 제안된 사업에 대해 KOICA 본부, 지역 사무소,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시행하며, KOICA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예비조사

예비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N-2년 3~4분기에 예비조사를 거쳐야 하며, 예비조사 절차와 산출물은 일반 국별협력사업과 동일

- 사업심사

N-1년 2월에는 예비조사가 끝난 사업들을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제안기관의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사, KOICA 내부에서 승인된 사업들은 외교부, 기재부, 국회 등의 정부 심의를 거친채서 결정

- 집행계획 수립

국회 승인 이후에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N년초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집행계획에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 시행

KOICA는 기획조사를 통해 수립된 집행계획을 토대로 제안·수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은 N년도에 착수함

2)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도국의 산업화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기금이며,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재부로서 기금 운용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 선정·추진 업무를 주관함, 기재부는 사업심사, 차관계약 체결, 용자실행 등 기금지원 실무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음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주로 지원

EDCF는 1987년 설립된 이래 2023년 말까지 총 58개 국가의 525개 사업에 대해 총 31조 6,069억 원을 지원(승인)하였으며, 총 집행 누계는 13조 9,480억 원이이며, EDCF 지원실적은 지역별로 아시아(62.2%), 아프리카(26.2%), 중남미(9.1%) 등의 순으로 지원해왔으며, 분야별로는 교통(38.9%), 보건(14.1%), 수자원·위생(13.1%), 에너지(9.7%), 공공행정(5.9%), 교육(5.7%), 통신(4.7%) 등의 순으로 지원하고 있음

<EDCF 차관 유형>

유형	내용
개발사업 차관 (Development Project Loan)	• 상하수도설비, 병원, 환경설비, 교통,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자사업차관 (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 민자사업의 실시예 필요한 자금(SPV 앞 지분출자, 대출, VGF 등 보조금 포함) 지원
프로그램차관 (Policy-Based Loan)	•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예 필요한 자금 지원
섹터개발차관 (Sector Development Loan)	•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예 필요한 자금 지원
기자재차관 (Equipment Loan)	•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사업준비차관 (Project Preparation Loan)	•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사업성 검토, 설계 및 견적 등) 실시예 필요한 자금 지원

EDCF 차관은 지원 대상 국가를 UN, OECD 등의 국가분류에 따라 4개 소속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금리 및 상환기관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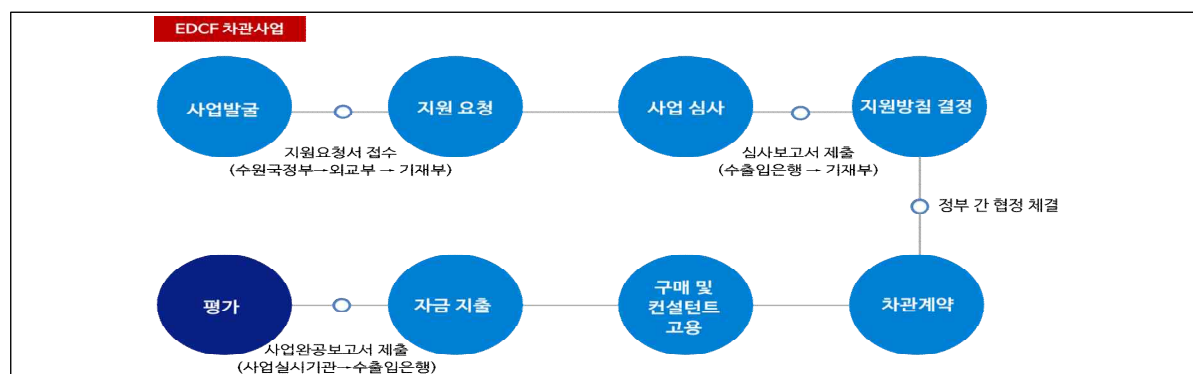
<EDCF 차관 지원조건>

구분	조건
국가분류	Ⅰ그룹: UN 분류 최저개발국 Ⅱ그룹: 최저개발국을 제외한 OECD DAC의 저소득국(LIC) Ⅲ그룹: 최저개발국을 제외한 OECD DAC의 하위중소득국(LMIC) Ⅳ그룹: 최저개발국을 제외한 OECD DAC의 상위중소득국(UMIC)
차관한도	• 총 사업비 범위 내
이자율	• 연 0.01~2.5% (소득그룹별 결정)
상환기간	• 최장 40년 이내
거치기간	• 최장 15년 이내
원금상환	• 연 2회 정기분할
이자징수	• 매 6개월 후취
담보	-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일 경우: 면제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일 경우: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지급보증 징구

EDCF 차관사업 발굴 시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사업계획이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어야 함, 또한, 수행기관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EDCF 차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절차는 사업발굴 및 지원요청, 사업심사 및 승인, 정부 간 협정 및 차관계약,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 지출, 평가로 진행됨

<EDCF 차관 사업추진 절차>



(1) 사업발굴

일반적으로 개도국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제개발기관, 공여국 정부, 공여국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발굴 주체로 활동하고 있음, 기존에는 개도국 정부 부처 및 민간 기업의 발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하여 직접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2) 지원요청

EDCF 자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 정부는 지원요청서와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사업실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정부에 지원 요청해야 하며, 수원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수원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교부 장관은 이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지

<지원요청 세부 절차>

수원국	외교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 지원요청서 (Loan Request) -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F/S Report)	- 수원국 소재 대사관 - 외교부 장관	- 기획재정부 장관	- 수원국 협의

※ 출처: EDCF 안내 책자(2024)

(3) 사업심사

기재부는 지원을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 → 수출입은행은 지원적격국 여부 및 차관자금 회수 위험 등을 파악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사업실시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검토 → 수원국이 지원 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 이를 기재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

수출입은행은 기술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단을 수원국에 파견하여 현지 심사를 시행하고, 동 현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국 정부와 토의록(Minutes of Discussion, MOD)을 작성하며, 수출입은행은 차관신청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토의록 등을 참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재부에 제출

(4) 지원방침 결정(승인 여부)

기재부는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사업의 주무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지원 규모,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

(5) 정부 간 협정 및 차관계약

외교부 장관은 결정 내용을 요약한 지원방침(Pledge)을 수원국 정부에 통보하고, 수원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 정부 간 시행약정(Arrangement, A/R)을 체결, 시행약정은 차관 집행을 위한 차관의 금액, 조건 등을 정하는 약정이며, 시행약정 후 실제 차관 집행 시에는 수원국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간에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 L/A)을 체결

차관공여계약은 국제금융계약의 일종으로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차주인 수원국 정부(수원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또는 수원국의 법인을 당사자로 하고, 차관 조건, 구매 절차, 자금 지출 절차 및 차관자금 관리 등 제반 세부 사항에 관한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정부 간 협정 내용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차관계약을 체결

(6)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

(7) 자금 지출

수출입은행과 수원국 정부 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이 발효되고 차관사업의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차관계약에 규정된 지출방식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이 시작, 차관자금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원화로 이루어지며 차관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공정 이행 정도에 따라 분할 지출

(8) 평가

사업이 완공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사업실시기관은 예비완공확인서를 발급하며, 하자보수 기간(통상 1년)에 공급된 재화와 용역이 문제가 없을 때는 최종완공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업은 완료된다. 이때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공여계약서(L/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완공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

다. 해외 자원

해외에서 주목할만한 ODA 자원으로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을 고려할 수 있음, MDB는 국제금융기관으로 주로 저금리 대출, 보조금, 기술지원을 통해 개도국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들은 또한 회원국 정부와 민간 부문에 자금을 제공하며,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개발 문제를 다룬다. MDB 자원 조달방안으로는 차관, 한국신탁기금, 기술지원 등이 있음

MDB의 주요 자금원은 회원국의 출자금, 자본시장 발행 채권, 그리고 대출 상환금이며, 수익성이 있고 채무 상환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만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주요 MDB로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EBI),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있음

한국 정부는 WB, ADB, IDB, EBRD, AfDB의 5개 MDB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개도국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ADB는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중점 ODA 지원 전략, 윤정부의 중앙아시아 대상 K-실크로드 정책, 그리고 아세안 지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등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아시아 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1) 세계은행(WB)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총칭한다. IBRD는 1945년 설립되어 저소득 국가 중 신용도가 있는 국가 또는 중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차관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IDA는 1961년 설립된 기구로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정부에 무이자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

<IBRD 및 IDA 개요>

구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설립목적	중·저소득국 대상 장기 개발자금(융자) 지원	저소득 개도국 대상 양허성 자금 지원
설립년도	1945	1960
한국 가입연도	1955	1961
가맹국 수	189개국	174개국
자금원	출자금 및 국제금융시장 차입금	가맹국의 출자·출연금 및 IBRD로부터 이전 수입

2023년 WB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IBRD는 총 385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101억 달러, 26%),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98억 달러, 25%), 동아시아 및 태평양(66억 달러, 17%), 중동 및 북아프리카(46억 달러, 12%), 남아시아(43억 달러, 11%), 동남아시아(23억 달러, 6%), 중앙 및 서아시아(5억 달러, 1%) 순으로 지원

섹터별로 공공행정 분야(93억 달러, 24%)를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에너지(69억 달러, 18%), 금융(42억 달러, 11%), 농업·어업·삼림(36억 달러, 10%) 등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23년 기준, IBRD의 주요 차입국은 인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순

한편, IDA는 총 34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143억 달러, 3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앙 및 서아시아(113억 달러, 30%), 남아시아(57억 달러, 15%)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기타 지역들의 지원 총합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섹터별로 가장 많이 지원한 분야는 공공행정 분야(79억 달러, 21%)로 IBRD와 동일하였으며, 다음으로 농업·어업·삼림(46억 달러, 12%), 사회보호(40억 달러, 11%), 에너지(33억 달러, 9%) 등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23년 IDA의 상위 수원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케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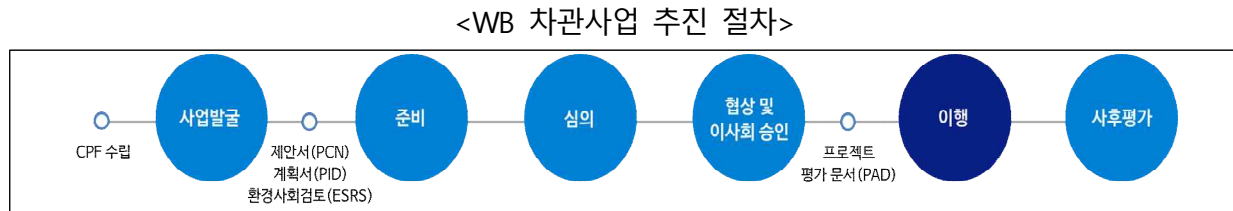
한국 정부는 WB에 총 5개의 신탁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MDB 중에 출연 규모가 가장 크고 나머지 MDB는 유사한 수준이며, 신탁기금 중에서는 한-WB 협력기금(Korea - 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KWPF)이 3억 2,800만 달러를 출연하며, 신탁기금 사업은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때문에 WB 재원을 조달하여 심사 ODA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금 규모 및 내용을 고려할 때 KWPF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WB 한국신탁기금 종류>

구분	내용
한-WB 협력기금(KWPF) (2013년 설립)	- 한국 파트너와의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 사업발굴, 사업 준비, 협조용자 등을 지원 - 수원국의 중점 분야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기금
녹색성장기금 (2012년 설립)	녹색성장 분야(교통, ICT, 도시개발, 수자원, 에너지, 환경 등)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
빈곤감축기금 (2012년 설립)	동아태 지역(동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개도국 금융발전을 위해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
경제평화구축기금 (2009년 설립)	WB 비회원국을 포함, 동아시아, 남아시아 및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 세계 취약국의 경제·평화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기금
IFC 기술협력기금 (2011년 설립)	수원국 민간투자 활성화 및 신시장·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수원국의 교통, ICT, 에너지, 환경 분야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

㉔ 차관사업

WB 사업추진 절차는 차관사업과 신탁기금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WB의 차관사업은 다른 MDB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발굴부터 사후 평가까지 6단계를 거쳐 추진



- 사업 발굴(Identification)

WB는 국가의 주요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CPF) 및 체계적 국가 진단(Systemic Country Diagnostics, SCD)을 수립하고, 이는 WB의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핵심 도구임, 따라서 수원국 또는 WB는 CPF와 SCD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

사업발굴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이며, 목표 및 의지에 따라 WB나 수원국에서 사업구상을 제안할 수 있고, 또는 다른 개발 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수원국과 함께 사업을 제안하기도 함

사업이 식별되면, WB는 사업제안서(Project Concept Note, PCN)을 통해 사업 개요, 목표, 수혜 대상 등의 기본 요소를 명시하며, 사업 세부 계획서(Project Information Document, PID)와 환경 및 사회 검토 요약(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Summary, ESRS)을 도출함

- 준비(Preparation)

발굴 단계에서 수립된 PCN, PID, ESRS 등을 바탕으로, WB와 수원국은 사업 심의를 위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술·경제·사회·환경 평가, 기술 설계 등을 시행함

- 심의(Appraisal)

WB는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제도·경제·조달의 4가지 측면에서 사업제안서를 검토·평가하며, 조달의 경우, 절차·규정 및 공사·재화·용역·장비 사양과 금융 조달계획을 검토, 또한 수원국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적 체계를 갖추었는지도 평가함

- 협상 및 이사회 승인(Negotiation/ Approval)

WB와 수원국 간 구체적인 사업 수행계획, 일정, 지원조건 등에 대한 차관계약 협상을 진행하며, 양측 간 차관 협상이 마무리되면, 프로젝트 평가 문서(Project Appraisal Document, PAD)를 포함한 기타 문서들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승인고 이사회 승인 이후 양측이 차관계약을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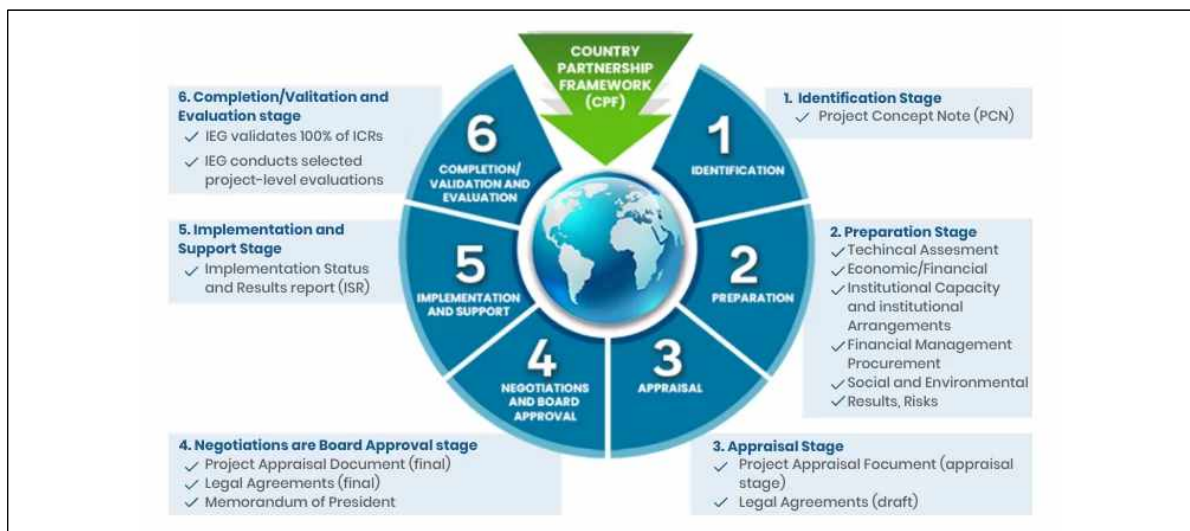
- 이행(Implementation)

수원국은 사업수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조달하고, WB는 규정·절차 준수 여부, 진행과정 등을 감독하며, 재화·용역 등의 조달은 일반적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짐

- 사후 평가

사업 완료 후 WB의 독립된 평가 부서가 사업 목표의 효율적·효과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WB 차관사업 추진 절차>



※ 출처: WB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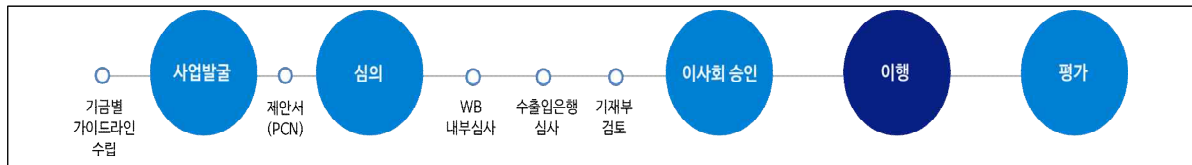
한국 조달연구원이 2021년에 발간한 WB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에 따르면, 사업발굴(1단계)부터 사업심의(3단계)까지의 과정을 파이프라인(Pipeline)이라고 정의하며, 그 이전은 프리-파이프라인(Pre-Pipeline) 단계라고 구분

파이프라인 단계만 거치는데도 약 2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7~10년이 소요될 수 있음

㉔ 신탁기금 사업

한편, 신탁기금 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업발굴, 심의, 승인, 수행, 평가의 순으로 차관사업의 추진 절차와 유사하되,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 절차가 필요

<WB 한국신탁기금 사업 추진절차>



- 사업 발굴

기금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WB 기금별 담당 부서에서 사업공모를 연1~2회 실시하거나, 연중 수시로 자체 사업발굴을 진행하며, 연간 1,000만불 이상의 사업을 승인하는 한-WB 협력기금, 녹색성장기금은 분야·지역·사업유형 등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심의

WB 내부 심사를 거친 사업목록·제안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수출입은행에서 1차 검토하며, 기재부에서 최종 검토하며, 이때 검토기준은 기금 목적 부합성, 사회·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인력 참여 등을 평가

- 승인

기재부에서 승인한 사업은 WB에 결과를 송부하고, WB에서 최종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하게 됨, 일반적으로 기재부의 예비 승인은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후 3주 이내, WB의 최종 승인은 6주 이내 결정

- 이행

WB 내부의 최종 사업제안서 승인과정을 거친 후 각 사업담당자(Task Team Leader)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

- 평가

WB의 신탁기금 및 사업 담당 부서에서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업별 진행 상황·성과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2) 아시아개발은행(ADB)

ADB 회원국은 총 69개국으로, 역내 49개 회원국과 역외 20개 회원국이 포함, 출자금 규모는 일본과 미국이 출자금 비중 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5.02%으로 일본, 미국, 중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에 이어 8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출자하고 있음

ADB는 차관(Loan), 무상원조(Grant),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등의 형태로 개도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ADB는 모든 자금을 본부에서 직접 통제·집행하고 있으며, 크게 일반자금과 특별자금으로 구분

일반자금은 회원국 출자, 차관상환, 차관을 통한 이익금,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등을 통해 조성되며, 특별자금은 회원국의 특별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일반자금은 상환 능력이 있는 회원국 및 민간 기관 대상 차관, 지급보증, 주식투자 등에 활용

특별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시아개발기금(ADF)은 최빈국 대상 차관을 위해 사용되며, 그 이외의 특별기금은 기술지원 및 무상원조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

<ADB 자금원>

구분		자금원	비고
일반자금 (Ordinary Capital Resources)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회원국 및 민간 기관이 동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s)			주로 민간사업부(PSOD)에서 수행되는 민간부문 프로젝트에 투자
특별 자금	아시아개발기금 (Asia Development Fund, ADF)	회원국들의 기부금	최빈국 회원국들에게 매우 낮은 이자율로 제공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특별펀드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TASF)	① PPTA(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프로젝트 계획 수립용 기술지원 ② AOTA(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자문운영 기술지원
	기타 특별기금 (Other Bilateral Funds)	특정 국가 혹은 기관이 ADB를 기금관리자로 지정하여, 특별공여기금 형식으로 제공	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e-Asia 지식협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 출처: ADB 입찰 가이드라인(한국에너지공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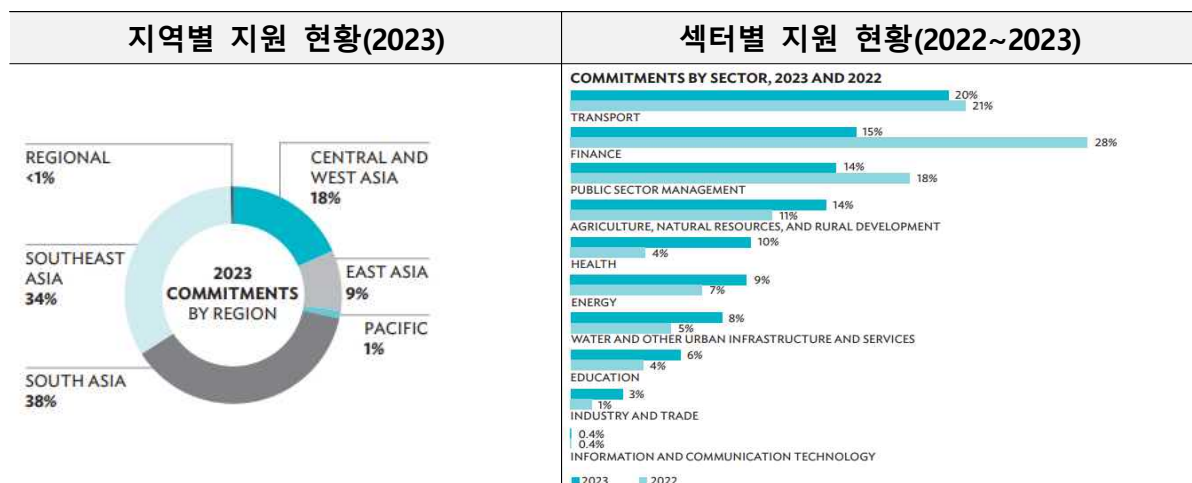
특별기금 중 한국이 주도하여 조성한 e-Asia 지식협력기금(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은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

2023년 12월 기준, 누적 합계 총 2억 6천만 달러를 동 기금으로 출연하였으며,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수자원,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공공관리 등의 분야를 우선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역량 강화, 정책 자문, 지식 공유,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의 사업 형태로 지원하며, 사업당 평균 지원금은 50만 달러로 추진되고 있음

ADB의 대부분 기금은 특정 목적 또는 양허성 차관을 기본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시설·인프라, 에너지 등 SOC 분야 사업이 주류임, e-Asia 지식협력기금은 ICT·전자정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ADB 재원을 활용하여 심사 ODA 사업을 추진할 때, 동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재원조달에 유리해 보임

2023년 ADB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ADB는 차관 및 보조금 등(Loans, Grants, and Others)으로 233억 달러(약 31조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2.6억 달러(약 3,595억원), 신탁기금을 포함한 공동자금 조달(Co-financing, including Trust fund)로 163억 달러(약 22조원)을 사용하여, 2023년에 총 399억 달러(약 54조원)을 집행

지역별로는 남아시아(88억 달러, 38%), 동남아시아(79억 달러, 34%), 중앙 및 서아시아(43억 달러, 18%) 순으로 지원했다. 섹터별로 교통분야(47억 달러, 2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금융(36억 달러, 15%), 공공부문 관리(33억 달러, 14%), 농업·천연자원·농촌개발(32억 달러, 14%) 순으로 지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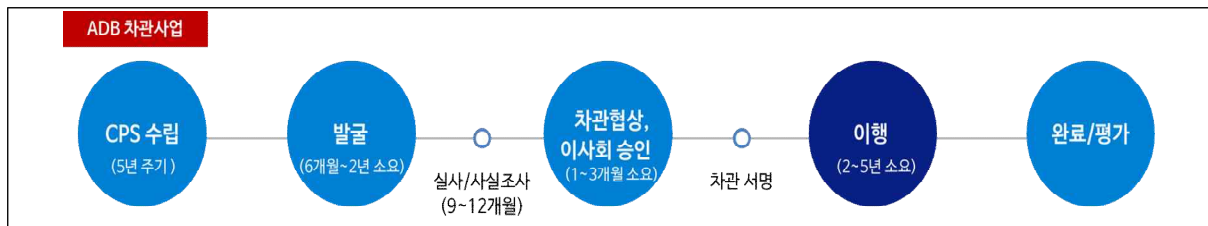


※ 출처: ADB 연차보고서(2023)

㉔ 차관사업

ADB 사업 형성 절차는 다른 MDB와 유사하게 6단계로 진행되며, 국가파트너십전략(CPS) 수립, 준비(Preparation), 차관 협상 및 이사회 승인(Approval), 이행(Implementation), 완료/평가(Completion and Evaluation) 순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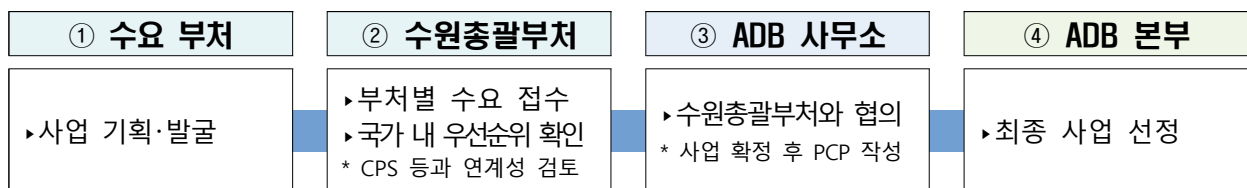
<ADB 차관사업 추진 절차>



- 국가파트너십전략(CPS) 수립

ADB는 개도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로 중기 개발전략 및 운영 프로그램을 정의한 국가파트너십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 각 개도국 회원국 정부, 시민사회, 비정부기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5년 단위로 CPS를 수립하며, CPS에는 해당 국가의 국가개발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ADB의 전략목표 및 우선순위 등이 포함됨

ADB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CPS 상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심사 ODA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CPS 내에 “공무원 역량강화”, “전자정부”, “디지털 공공행정 서비스”, “ICT” 등이 포함되어있어야 사업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CPS는 5년마다 진행되며, 개별 사업 발굴은 매년 국가별 수원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발굴

ADB는 개도국의 프로젝트 발굴 및 상세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을 제공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초기 빈곤도 및 사회분석을 통해 프로젝트로 유익한 영향을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사회집단을 파악한다. ADB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개도국 정부와 함께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ADB, 개도국 정부, 컨설턴트가 공동으로 최종보고서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ADB와 개도국 정부는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수행할 시행기관을 합의하며, 이러한 발굴 단계는 ADB와 수원국이 함께 주도하며, 약 6개월~2년 소요

ADB는 프로젝트 검토 중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프로젝트 타당성을 조사 → 사실조사 출장(Fact-finding Mission)을 통해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경제적, 환경적, 관리 측면과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을 조사 → 또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젝트 위험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차관 조건 등을 협의하며, 실사는 ADB에서 주도하며, 약 9~12개월 소요됨

- 차관 협상 및 이사회 승인

차관 계약서 초안과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출 및 검토를 진행, 검토의견에 따라, ADB와 수원국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함, 수원국 정부와의 협상이 완료된 후, 차관 제안서는 ADB 이사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며, 명칭은 차관 제공합의서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RRP)하며, 차관 협상 및 이사회 승인 단계는 일반적으로 1~3개월간 소요됨

이사회 승인 이후, 제안서를 수원국 정부로 보내 수원국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으며, 차관계약은 ADB 총재와 수원국 정부 대표가 서명 → 차관 효력 발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계약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는 법적 의견, 공동 자금 조달의 상호 효력, 종속차관계약(subsidiary loan agreement) 등이 요건에 포함됨, ADB의 법률 자문과 프로젝트 담당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 대출이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음을 선언하며, 통상적으로 차관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90일의 기간이 필요

- 이행

프로젝트의 이행은 수원국이 주도하며, 시행기관(executing agency)이 합의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ADB의 프로젝트 부서는 차입자 및 시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ADB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승인을 받은 지출 항목에 대해 대출금을 지급, 프로젝트 실행 기간은 프로젝트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까지 소요되며, ADB는 프로젝트 동안 매년 최소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실행 상황을 평가함

- 완료/평가

ADB는 프로젝트 완료 후 12~24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 ADB의 평가 방식이 초기에는 경제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의 투입-산출 관계(input-output relationship)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투입, 산출, 성과, 영향 등 전체 결과 사슬(results chain)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평가의 초점도 개별 프로젝트에서 국가 전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의 전반적인 성과와 영향을 살펴보는 쪽으로 바뀜, ADB가 한 국가에 제공하는 차관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등의 공여성 지원을 모두 평가하며, 관련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특히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㉔ 신탁기금 사업

한편, e-Asia 지식협력기금 등 ADB 한국신탁기금 사업 형성 절차는 사업발굴, ADB에서 기재부로 승인요청, 기재부의 사업검토 및 승인, 이행 순으로, 다른 MDB 내 한국신탁기금 사업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됨

<ADB 한국신탁기금 사업 추진 절차>



- 사업발굴

수원국 또는 ADB가 신탁기금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ADB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

- 승인요청

ADB는 우리 정부의 기금관리 부서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재부의 승인을 요청

- 사업검토 및 승인

기재부는 내부심사(국제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ADB에 통보

- 사업이행

ADB 내부 절차에 따라 컨설턴트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

3) 미주개발은행(I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의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음, 지역개발 금융기구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개발과 역내 자유무역 및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차관 및 기술협력 지원을 제공

IDB의 회원국은 총 48개국으로 역내 26개 회원국과 역외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처음으로 1976년 IDB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2005년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47번째 가입국이 되었음

IDB는 다른 MDB들과 마찬가지로 차관, 무상원조, 보증, 출자, 기술협력 등의 형태를 통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IDB의 자금원은 통상자본과 특별운영기금 및 기타자금으로 구성

<IDB 자원 구성>

자금	세부분류	내용
통상자본	납입자본	• 각 IDB 회원국 납입금
	최고자본	• 통상자본의 95.7% 차지, IDB 채권발행을 보증
	채권발행	• 최고자본을 바탕으로 매년 80-100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 • 통상자본 차관 지원규모의 90%를 차지
	유보금	• 차관 상환 및 투자수익에 따른 유보금
기타기금	신탁기금	• 개별국가 및 국가 그룹이 위탁한 50여개 이상의 신탁기금 • 각 신탁기금의 성격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지역, 지원 상한금액 규정
	일본특별기금	• 기술협력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무상원조에 주로 이용
	협조융자	• 공공 및 민간부문 프로젝트에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협조융자 주선 •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양허성 금융지원을 제공
특별운영기금		• 각 회원국이 납입하며, 지원 대상국 볼리비아 등으로 제한

※ 출처: 다자개발은행 자원조달 방법과 절차(KOTRA, 2016)

IDB의 202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총 92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127억 2,200만 달러를 승인하였고, 섹터별로 교통(22억 달러, 17%), 국가 개혁 및 현대화(21억 달러, 17%) 에너지 부문(15억 달러, 12%), 사회 투자(11억 달러, 9%), 금융시장(11억 달러, 9%) 순으로 지원,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우스콘 지역(41%), 안데스 지역(29%), 중미 지역(21%), 카리브해 지역(8%), 지역 사업(1%) 순으로 지원하였음

<IDB 지역별 지원현황(2023)>

구분	포함 국가	지원비율
사우스콘 지역 (Southern Cone)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41%
안데스 지역 (Andean Group)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29%
카리브해 지역 (Caribbean)	바하마,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자메이카,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8%
중미 지역 (Central Americ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21%

한국 정부는 총 4개의 신탁기금을 IDB에 출연하고 있음, 2005년 가입 당시 지식협력기금(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KPK), 빈곤감축기금(Korea Poverty Reduction Fund, KPR), 민간개발혁신기금(The Korea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Fund, KPS) 등 3개의 신탁기금을 설립

2012년에 재정혁신협력기금(Public Capacity Building Korea Fund, KPC)을 추가로 설립,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IDB 신탁기금을 통해 총 344개 사업에 1억 9,6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은 IDB에 귀속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원조국 자격으로 자문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지식재산 ODA 사업 사례로는 파라과이 지식재산 관리강화 사업이 있음, 한국 정부는 2015년 파라과이 특허청에 KSP 시스템 컨설팅을 지원했고, 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IDB 신탁기금을 통해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 하였음, 동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 특허청에 문서 전자화 시스템과 내부 행정지원 시스템이 구축

<IDB 한국신탁기금 지원실적>

구분	지원목적	누적 승인사업 (2021년 기준)	누적 승인금액 (2021년 기준)
지식협력기금 (KPK)	과학&기술, 교육 및 IT&인프라 제도의 개선 역량 강화 지원	140개	7,880만 달러
빈곤감축기금 (KPR)	빈곤감소 및 사회개발활동, 재난 예방 및 구호 사업 지원	135개	5,520만 달러
재정혁신협력기금 (KPC)	민간기업개발 및 혁신 등에 대한 기술지원	2개	2,250만 달러
민간개발혁신기금 (KPS)	재정사업 관리 등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사업지원	67개	4,000만 달러
합계		344개	1억 9,650만 달러

※출처: 미주개발은행 연계 한국 보건의료 협력 사업 현황 및 시사점(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

㉔ 차관사업

IDB 사업추진 절차는 차관사업과 신탁기금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IDB 차관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사업준비, 이사회 승인, 수행, 완료 및 평가로 추진

<IDB 차관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준비

IDB 차관사업은 사업제안서 작성에서 이사회 상정 전까지 아래와 같이 총 6단계의 세부 절차를 거치며, 사업제안서(Project Profile)는 사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목적, 추진방안, 기대효과, 기술 요소,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소요예산 등)을 포함됨

적정성 심사(Eligibility Review Meeting)에서는 IDB의 수원국 지원전략과의 일치 여부, 사업 일정, 투입자원 등에 대해 심사하며, 집행계획(Proposals for Operations Development, POD)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 투입자원, 일정을 구체화한 문서이며, 개발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등을 포함

-
- ① IDB와 수원국 정부 간 사업제안서(Project Profile) 작성
 - ② 제안서 심사를 위한 적정성 심사(Eligibility Review Meeting, ERM) 개최
 - ③ ERM 승인 후, 집행계획(Proposals for Operations Development, POD) 작성
 - ④ 품질 및 위험 검토를 통한 POD 심사
 - ⑤ 운영정책위원회 심사용 차관제안서(Draft Loan Proposal) 작성
 - ⑥ 운영정책위원회 승인 완료시, 프로젝트 최종 승인을 위한 이사회 회부
-

- 이사회 승인

제안사업이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수원국에서 신청서(Loan Proposal)에 서명

- 수행

IDB는 사업이 이행되는 동안 차관결과보고서(Loan Results Report), 현황보고서(Progress Monitoring Report) 등을 통해 시기별 모니터링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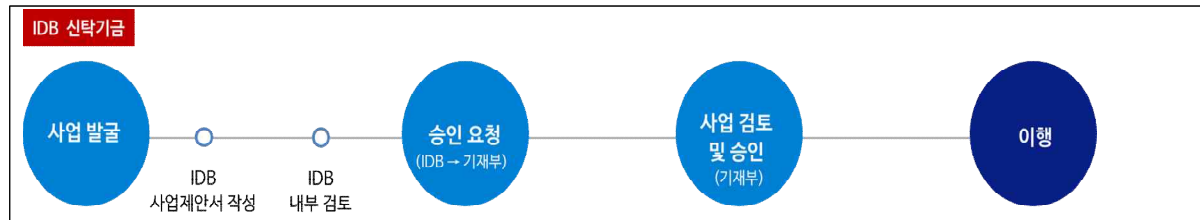
- 완료 및 평가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주요 결과물과 향후 이행될 프로젝트들의 개선을 위한 과제 분석함

㉔ 신탁기금 사업

한편, 신탁기금 사업은 차관사업 이전에 기술지원,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실시하며, 사업 발굴, 승인 요청, 사업 검토 및 승인, 이행의 순으로 추진됨

<IDB 한국신탁기금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발굴

수원국 또는 IDB가 신탁기금 성격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며, 양측 협의 및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IDB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 승인 요청

IDB는 기재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

- 사업검토 및 승인

기재부는 내부심사(국제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IDB에 통보

- 사업 이행

사업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IDB 내부 절차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을 이행

IDB 한국신탁기금 사업은 차관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재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 기간은 최소 2년이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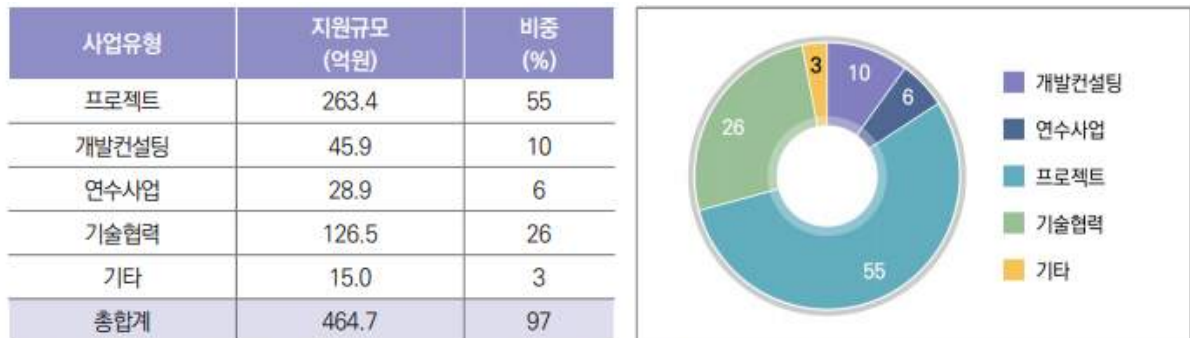
IDB 파라과이 사업의 경우, 2016년 말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2017년에 IDB 내부 승인이 완료되었고, 2018년에 기재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결정됨, 최종적으로 2019년 6월에 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감안하면, 제안서 제출부터 계약 체결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지식재산 ODA

- 특허청을 중심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ODA, 지식재산 국제협력, 지식재산 통상협력 등 IP-ODA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임

- 특허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IP-ODA 사업은 연간 20억 내외로 운영되다 보니, 지식재산 ODA의 사업모델에 개발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림> 사업 유형별 IP-ODA 지원 현황⁵⁾



출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2024) 및 KSP 추진현황 기준

- 사업 유형별 지원 비중은 프로젝트가 263.4억원으로 55% 이상 차지하며, 기술협력 (126.5억원), 개발컨설팅(45.9억원), 연수사업(28.9억원), 기타(15억원) 순으로 구성

- 프로젝트 사업은 특허청 예산보다는 KOICA, IDB 한국 신탁기금과 연결된 사업 등으로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지식재산 ODA는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 하고, 선진국-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 (Disparity)를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한유진(2013)의 연구에 의하면 IP ODA는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주체가 되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창출·보호·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자체로는 개도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주체가 될 수 없고, 개도국의 주력 산업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을 창출(권리화)·활용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제한적 역할을 수행 할 수 밖에 없음

5) IP ODA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IP Frontier 2024.3호)

- 따라서 지식재산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지식재산 수준, 경제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 SDGs 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II. 지식재산과 SDGs 연계

- 지식재산 개발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각 분야별 목표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도출하는데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모두가 지식재산 분야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기아 종식(zero hunger) 등 7개 목표 및 세부 목표는 지식재산 개발협력 측면에서 이행 가능한 목표 및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음
- ① **컨설팅 수혜 대상 정의** : 개도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재권 컨설팅 대상 또는 수혜 그룹을 지식재산 행정·법률 관련 정부조직·기관, 소상공인·농림어업인,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일반 국민 등 5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 ② **SDGs와 매칭** : 지원 사업의 목표 설정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법제 및 국가 계획에서 제시되는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의 목표,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목표 등을 검토 필요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 기존 지식재산 개발협력 사업의 유형 및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표> 지속가능목표의 지식재산 분야 적용

SDGs	SDGs 세부목표	지식재산 개발 협력 분야 및 목표
2. ZeroHunger	·종자,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 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 전통 지식과 유전자원 활용으로 발생 하는이익의 공정한 분배 ·소규모 식량 생산자, 여성, 토착민, 가족 농, 어민 등의 생산성과소득 2배 증대 ·농촌 인프라, 농업 연구 및 농업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과가축 유전자 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육성 체계 정립 ·전통자원의 권리화 및 산업화 촉진 ·신품종의 개발 및 보호 강화 ·수원국 상황 및 운영 관리 능력에 부합하는 적정기술 발굴·지원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성 증대
4. Quality Education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과 성인 수 대폭 증대 ·직업훈련, 공학, 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위한 장학금 대폭 확대 등	·온라인 교육, 정규교육을 포함한 지식재산 교육 체계 설계 및 인력 양성 ·지식재산 업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식재산 인력 역량 강화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촉진 정책의 개발 및 이행 등	·소상공인의 상표·브랜드 개발, 권리화 촉진 및 활용 강화 ·지식자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국가별 상황에 맞게 고용과 GDP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확대 ·연구개발 인력 수 및 공공·민간 부문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 기술 역량 향상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등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촉진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 지원 ·직무발명 활성화 ·대학·연구기관 지식재산 관리·활용 역량강화 ·지식재산 기반의 산학연협력 강화
15. Life on Land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 공평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촉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증대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 육성 체계 정립 ·전통자원의 권리화 및 산업화 촉진

Ⅲ. 추진 내용

1. 연구모형



2. 심사ODA 사업 모델

1) 심사 ODA 개념 정의

□ 심사 ODA 개념 정의를 위한 사전 검토

○ 지식재산(IP) ODA의 목표와 정의

- (목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IP-divide)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활용을 지원

* (지식재산기본법 제37조)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IP ODA 정의 사례)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주체가 되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창출·보호·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한유진, 2013)

→ **(Keyword)** 지식재산 격차,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활용, 경제발전(성장)

○ SDGs와 연계한 심사 ODA 분야 및 목표

- SDGs 4, 9, 16, 17 및 세부 목표와 연계하여 심사 ODA의 목표 및 분야를 설정해볼 수 있음

→ **(Keyword)** 심사관 역량 강화, 심사관 양성, 심사행정혁신(심사 인프라 구축·제도 개선), 지식재산 심사제도 국제화, 지식재산 심사 관련 통계·정보의 생산·공개(유통)·활용

SDGs	SDGs 세부 목표	심사 ODA 목표 및 분야
4.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력 (청소년, 성인) 대폭 증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보장	-지식재산 심사 업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운영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통한 심사관 역량 강화 -심사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 도모)	-산업 다각화, 부가가치 증대를 촉진하는 정책환경 보장 등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연구개발 인력 수 및 공공·민간 부문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 기술 역량 향상	-개발도상국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 산업의 기술 역량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심사 행정혁신 지원(지식재산 심사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
16. Peace, Justice and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	-심사 행정혁신 지원을 통한 투명하고,

Strong Institutions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정의 보장과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하며 책임성 있는 제도 구축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	지식재산 친화적인 심사 체계 구축 -심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국제기구, 지역별 공동체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지원 -지식재산 심사 관련 통계 및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지원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국가 간 협력, 지역·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측정 수단 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 등	-심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국제기구, 지역(대륙)별 공동체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지원 -지식재산 심사 관련 통계 및 정보의 생산·공개(유통) 및 활용 촉진 지원

○ 심사 관련 국제협력 사례 분석

- 한국신탁기금 개도국 심사관 교육과정, 사우디아라비아·UAE 심사 대행, UAE 신규심사관 교육, WIPO 특허·디자인·상표 심사관 교육, 사우디아라비아·필리핀 PCT ISA 지정 지원

2) 심사 ODA 정의

□ 심사 ODA 개념 정의와 목표

- 개발도상국 특허청(IP office)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권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공적개발원조(ODA) 활동
- 심사관(IP Examiner) 및 심사 자문관(IP Examination Advisor) 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식재산 심사관 역량 강화,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심사제도 국제화를 지원하는 인적 기여형 공적개발원조(ODA) 활동

* [부록 1] 심사 ODA 사업 모델 정의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

[부록 2] 지식재산 심사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간 협력 사례

□ 심사 ODA 사업의 목표

○ 심사 ODA 목표

1.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 및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허청(IP office)이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행정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2) 효과적이고 투명한 지식재산 심사제도 운영, 심사제도 국제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

○ 세부 목표 (SDGs 달성 및 개발도상국 지원)

-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심사 품질 향상, 심사 기간 단축 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 강화
- 심사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지식재산 친화적인 심사 체계 구축
- 심사제도 국제화를 통해 지식재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세부 목표 (지식재산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우리 기업 지원)

- IP5 위상에 맞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글로벌 리더십 강화
- * 우리나라 특허청은 '14년 6월에 UAE에 심사관을 현지 파견하고 실체심사 대행을 실시함으로써 한 국가의 특허심사 수행을 위해 심사관을 파견한 세계 최초의 국가 (특허청)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음
- 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을 통해 현지 시장진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3) 심사 ODA 사업모델의 구성 요소: 활동

□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심사 품질 향상 지원 활동 등 6개 활동으로 구성

○ 심사 ODA 사업 추진 유형에 따라 포함되는 활동 내용을 조정

- 사업 추진 유형별로 목표, 예산, 시행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유형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유형에 적합한 구성 요소로서 활동 범위를 선택

- 활동(Activity) 1,2,3은 모든 사업 추진 유형의 공통 구성 요소

- 활동(Activity) 4는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사업, 신규 심사 ODA 사업 등에만 적용

- 활동(Activity) 5는 신규 심사 ODA 사업에만 적용

- 활동(Activity) 6은 신규 심사 ODA 사업과 같이 PMC가 존재하는 경우 PMC 활동 (역할)

※ 사업 추진 유형별 활동 기준표 참조

○ 심사관-멘토 매칭을 통한 1:1 자문, 개별 심사 건에 대한 자문 등은 포함되나 직접 실체 심사를 수행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사 대행 활동은 제외함

- 특허청(KIPO)은 '14년 6월에 UAE에 심사관을 현지 파견하고 실체심사 대행을 실시함으로써 한 국가의 특허심사 수행을 위해 심사관을 파견한 세계 최초의 국가(특허청)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심사대행은 심사서비스 수출에 가깝다는 점, 개도국의 경우 심사대행 물량이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 UAE 심사대행 시 파견된 특허심사관 1명이 1년 간 100건 정도의 실체 심사 수행

○ 해외 특허청 파견 경험이 있는 심사관, 퇴직 심사관 의견 등 반영

□ (Activity 1)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Examiners Capacity Building)

○ 활동 목표

-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심사 품질 향상, 심사 기간 단축 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 강화

○ 핵심 활동

- 기술 분야별 그룹교육·워크숍 등 포괄적 역량 강화(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심사관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별 심사 건 자문 및 심사관-멘토 매칭을 통한 1:1 자문

○ 세부 활동

- 심사관 역량 평가 도구 적용 및 심사관별 역량 평가
- 역량 평가 결과 및 심사관 수요를 반영한 심사관별 역량 강화 지원 방향 설계
-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 및 참여자 선정
- * 1단계: 심사 기준 및 심사 지침 등 심사 기본 교육
- * 2단계: 선행기술조사 방법 및 심사관 판단 내용(등록, 거절, 보정 등) 통지서 작성 방법
- * 3단계: 개별 심사 건 자문 및 심사관-멘토 매칭을 통한 1:1 자문
- 심사 여건 및 환경에 따른 특별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예시) 심사 취약 기술 분야 파악 및 심사 실무지식 공유를 위한 그룹교육·워크숍
선행기술조사경진대회 개최 및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발굴·공유

○ 성과(Outcome)

- FA 기간 10% 단축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심사 기간 단축.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대비)
-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20% 향상 (심사관 대상 조사 결과 집계.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대비)

○ 산출(Output)

- 역량 평가를 시행한 심사자 수
-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 * 심사 기본 교육 참여 심사관 수*0.5 + 선행기술조사 및 통지서 작성 방법 교육 참여 심사관 수*1.0+개별 심사 건 자문 및 1:1 자문 참여 심사관 수*2.0
-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 *심사 기본 교육 만족도*0.5 + 선행기술조사 및 통지서 작성 방법 교육 만족도*1.0+ 개별 심사 건 자문 및 1:1 자문 참여 만족도*2.0
-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만족도

□ (Activity 2)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자문(Examination Quality Management Consulting)

○ 활동 목표

- 심사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지식재산 친화적인 심사 체계 구축

○ 핵심 활동

- 심사 품질관리 매뉴얼, 고객(출원인 및 대리인) 품질평가 조사표 등 심사 품질관리

툴(tool) 구축 및 개선 자문

- 심사 품질관리 툴을 활용한 품질평가 실행 및 결과에 따라 개선 사항 자문
- o 세부 활동
 - 지식재산 심사 현황 및 심사 관련 행정 절차 현황 진단
 - 심사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툴(tool) 진단 및 개선 필요 요소 파악
 - 심사품질에 대한 고객(출원인 및 대리인)의 품질평가 조사표 구축 및 개선
 - 심사 품질관리(EQM) 체계에 대한 ISO9001 인증 추진
 - 심사 품질관리 툴을 활용한 품질평가 실행 지원
 - * 심사 품질 종합평가 실행 방안, 심사 품질 개별평가 대상 선정 및 실행 방안 자문
- 심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심사 품질관리 선진화 방안 자문
- o 성과(Outcome)
 - 심사 품질 종합평가·개별평가 점수 각각 10% 향상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대비)
 -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20% 향상 (심사관 대상 조사 결과 집계.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대비)
- o 산출(Output)
 - 개선(개발)한 심사 품질관리 툴(tool)의 수
 - * 심사 품질관리 매뉴얼, 심사 품질에 대한 출원인 및 대리인의 품질 평가 조사표 등
 - 심사 품질평가(종합평가, 개별평가) 수행 횟수
 - 심사 품질관리(EQM) 체계에 대한 ISO9001 인증
 -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문 보고서

□ (Activity 3) 심사제도의 국제적 조화 지원(Examination Standards Harmonization)

- o 활동 목표
 - 심사제도 국제화를 통해 지식재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o 핵심 활동
 - 심사 기준·지침 등 심사 제도의 국제적 조화 자문
 - 심사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지원
- o 세부 활동
 - 수원국 심사지침·기준 현황 진단
 - 수원국 심사지침·기준과 국제표준과의 차이 분석
 - 우리나라를 포함한 벤치마킹 대상 심사제도 정리 및 심사 제도 개선 제언·권고 사항 작성 및 공유

- 제도 조화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제조약 가입 관련 자문
- 각 국가별 출원인, 대리인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지원

○ 성과(Outcome)

-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제도' 지표 중 '규제 환경' 평가 개선

○ 산출(Output)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심사 제도 개선 자문 보고서
- 자문 보고서에 따른 심사 제도 개선 수
- 국제 이해관계자(출원인, 대리인 등) 접근성 지원 가이드라인

□ (Activity 4) 수원국(기관) 요청 프로젝트(Special Project)

○ 활동 목표

- 심사 ODA 사업의 성과(효과) 확대·확산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수원국(기관)에서 요청한 사업 중 수원국(기관)의 특성에 부합하고, 심사 ODA 사업의 성과(효과)를 확대·확산하거나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수행

○ 핵심 활동 (예시)

- 수원국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유상, 무상) 중 지식재산 연관 사업 자문
-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조사 기관 활용 방안 자문
- * 우리나라의 특허, 상표 조사분석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사례, 전문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및 평가 방법 및 경험 공유
- 위조 상품의 국가 간 이동·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공무원(세관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 대상 지식재산권 역량 제고 교육
- *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법령, 브랜드별 위조상품 식별 요령 등

○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 수원국(기관) 요청 사항에 따라 확정

□ (Activity 5) 초청 연수(Invitational Training)

○ 활동 목표

- 우리나라의 심사역량·경험 전수 및 연수 결과 이행계획(Action Plan)의 현업 적용을 통한 개발도상국 심사관의 심사역량 강화

○ 핵심 활동

- 초청 연수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 및 이행계획 (Action Plan) 작성

- o 세부 활동

- 초청 연수 대상(고위급 또는 실무급) 및 참여자 선정
- 초청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협의
-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 및 만족도 조사
- 이행계획(Action Plan) 작성 지원

- o 성과(Outcome)

- 초청 연수 결과 현업 적용도 85점 이상
 - * 초청 연수 만족도*0.3 + 연수 성취도*0.3+이행계획(Action Plan) 영향력*0.4
 - * 초청 연수 만족도는 다면평가 설문을 통한 연수생 만족도 평균 변환 점수, 연수 성취도는 연수생 성취도 평가지 활용 평가 점수, 이행계획(Action Plan) 영향력은 다면평가 설문을 통한 액션플랜 영향력 평균 변환점수
-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20% 향상 (심사관 대상 조사 결과 집계.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 대비)

- o 산출(Output)

- 초청 연수 이수자 수
- 연수 결과 현업 적용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
- 초청 연수 결과보고서

- (Activity 6)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 o 핵심 활동

- 활동 보고서 작성 및 특허청(KIPO), 수원국 특허청(IP office) 보고(제출)
- 활동 1,2,3(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활동 4,5도 포함)에 핵심 활동·프로그램별 성과 및 만족도 분석

- o 세부 활동

- 중간 보고서(연차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제출)
- * WFK 자문단을 사업 추진 유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월1회 업무 실적과 계획을 포함한 월간 활동보고서, 반기 활동보고서, 귀국보고서, 현지활동조사서 등을 작성 및 보고해야 함
- 활동 1,2,3(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활동 4,5도 포함)에 대한 제언(recommendations)이 포함된 최종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및 만족도 분석
-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설계 등
- 심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 성과 및 심사 품질평가 성과 분석
-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심사 품질 종합평가·개별평가 설계 등

□ 사업 추진 유형별 활동 기준표

Activities	사업추진 유형					
	WFK 자문단, 인사혁신처 파견 등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신규 심사 ODA 사업	
	Y1	Y2	Y1	Y2*	Y1	Y2
1. Examiners Capacity Building	60%	20%	60%	20%	50%	20%
2. Examination Quality Management Consulting	15%	35%	15%	30% (35%)	15%	25%
3. Examination Standards Harmonization	15%	35%	15%	30% (35%)	10%	25%
4. Special Project	-	-	0%	10% (0%)	10%	10%
5. Invitational Training	-	-	-	-	5%	10%
6. Project Management	10%	10%	10%	10%	10%**	10%**
Output	- 역량 평가를 시행한 심사자 수 -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만족도 - 개선(개발)한 심사 품질관리 툴(tool)의 수 - 심사 품질평가(종합평가, 개별평가) 수행 횟수 - 심사 품질관리(EQM) 체계에 대한 ISO9001 인증 -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문 보고서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심사 제도 개선 자문 보고서 - 자문 보고서에 따른 심사 제도 개선 수 - 국제 이해관계자(출원인, 대리인 등) 접근성 지원 가이드라인 - 초청 연수 이수자 수 - 연수 결과 현업 적용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 - 초청 연수 결과보고서					
Outcome	- FA 기간 10% 단축 -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20% 향상 - 심사 품질 종합평가·개별평가 점수 각각 10% 향상 -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제도' 지표 중 '규제 환경' 평가 개선 - 초청 연수 결과 현업 적용도 85점 이상					

* 수원국(기관) 요청 프로젝트(Special Project)가 없는 경우

** PMC가 존재하는 경우 PMC 활동(역할)

4) 심사 ODA 사업모델의 구성 요소: 예산, 파견 전문가

□ 파견 전문가(심사관, 심사자문관, 자문단원 등)에 대한 인건비, 체재비, 현지 활동비

○ 직접 인건비(파견 심사관 및 심사자문관)

- 파견 심사관 및 심사자문관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과거 사례(사우디아라비아 파견 프로그램),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직접 인건비 지급 기준 등을 참조하여 산출

* 사우디아라비아 심사역량 강화 지원 사례의 경우 파견자에게 연간 급여로 206,963 USD (이주비 및 가족 지원금 별도)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조만 가능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최근 개정 2023.7.13.)의 전문가 등급별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1급은 1억 560만원, 2급은 8,184만원, 3급은 6,864만원으로 산출

* [부록 3]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문가 등급별 비용 지급 기준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10,560만원	8,184만원	6,864만원	6,072만원	5,280만원	4,224만원

* 1일 지급액 X 22일 (파견 일수 상한 기간) X 12개월

-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신규 심사 ODA 사업 추진,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근무(인사혁신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심사관·심사자문관의 직접 인건비(연간, 1인)는 KOICA 전문가 등급 3급에 해당하는 6,864만원을 기준값으로 설정

* 전문가 3급: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 경력자,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 WFK 자문단원의 자격 요건은 파견국이 요청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전문가 3급에 해당

※ WFK 자문단과 같이 직접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단신부임 원칙의 파견 사업에서는 선정된 전문가(자문단원)에게 현지생활비, 주거비, 현지활동 지원비 형태로 경비 지급

※ 공무원 파견제도, 국제기구 고용휴직제(인사혁신처) 형태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예외적 상황(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

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에서는 기준값을 활용 가능

○ 체재비(현지 생활비, 주거비 등) 및 현지 활동 지원비

- 공무원 파견제도,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근무(인사혁신처) 방식에서도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함
-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신규 심사 ODA 사업 추진 시에는 특수지 가산금, 체재비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직접 인건비의 60%를 기준값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유형은 직접 인건비 외에 기술료, 특수지 가산금, 직접 경비(항공료, 체재비,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현지활동 지원비, 기타 경비)가 포함됨

* 특수지 가산금은 지역에 따라 5~15%이며 적용 요율을 해외투입 직접인건비에 곱하여 특수지 활동 수당 산출

* 체재비는 '3급', 지역 '다 등급' 기준, 60일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하면 약 41,900 USD 정도로 산출됨

* 현지 활동비는 필요에 따라 실비로 지원되며, 활동물품지원, 일반활동지원, 사무기기 등이 포함

* [부록 3]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문가 등급별 비용 지급 기준

- WFK 자문단의 경우 현지생활비, 주거비, 현지활동 지원비 형태로 경비 지급

* WFK NIPA 자문단 해외파견사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산출금

* 전문가 '3급', 지역 '다 등급' 기준으로 산출하면 출·귀국준비금(120만원), 생활비(최대 26,640 USD), 주거비(최대 16,200 USD), 현지 활동 지원비(연간 최대 8,400 USD) 등 최대 51,240 USD (현지 활동 지원비 제외 시 42,840 USD)

* 현지 생활비: 생필품 구매, 출퇴근 교통비 및 식비 등 최소생활비 지원을 위한 현지 생활비를 지급

* 주거비: 파견 계약 기간 동안 주거비를 지급

* 현지 활동 지원비: 자문단원을 대상으로 지급 한도 금액 내에서 활동 물품 지원, 일반활동 지원 등 현지활동 지원비 지원

* [부록 4] WFK NIPA 자문단 해외파견사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경비 지급 기준

□ 심사 ODA 사업모델의 구성 요소인 6개 활동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 파견 심사관 및 심사자문관에 대한 직접 인건비와 현지 활동 지원비를 제외하고 각 핵심 활동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

- 파견 기간(Secondment period) 2년 / 2명 파견 기준

Activities	WFK 자문단, 인사혁신처 파견 등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신규 심사 ODA 사업
1. Examiners Capacity Building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가능	0.5억 원	2억 원
2. Examination Quality Management Consulting		0.3억 원	1.5억 원
3. Examination Standards Harmonization		0.2억 원	1억 원
4. Special Project	-	0~0.1억 원	1억 원
5. Invitational Training	-	-	1.6억 원 (10명, 15일, 1회)
6. Project Management	현지 활동비에 포함	전체 사업비의 5%	전체 사업비의 10%

☐ 파견 심사관 및 심사자문관 자격 요건

- 직접 인건비와 현지 활동지원비의 기준 값인 전문가 3급 기준에 맞추어 자격 요건 설정
 - 심사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식재산 심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심사자문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로 지식재산 심사·심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
 - * 지식재산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변리사로 지식재산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
 -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로 지식재산 교육 5년 이상 경력자
- ※ WFK 자문단원은 파견국이 요청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문단 모집 공고 시점에 퇴직하였거나 해외 파견일 이전에 퇴직 예정인 자이어야 함
- 기타 우대 요건
 - 의약품, 바이오, 전기전자, 기계 등 수원국(기관) 심사 취약 분야 전공자
 - 영어 회화 및 독해 능통자, 제2외국어 구사 능력자

5) 심사 ODA 사업 추진 유형 및 우선순위

☐ 심사 ODA 사업 추진 유형

- 심사 ODA 사업 추진 방식은 파견 대상(심사관, 심사 자문관), 사업 수행 방식(특허청 주도, 타 부처(기관) ODA 사업 활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특허청 주도	타 부처(기관) ODA 사업 활용
심사관(IP Examiner) 파견 (특허청 공무원)	1. 공무원 파견제도 (인사혁신처) 2.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3. 신규 심사 ODA 사업	5.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6. 인사혁신처 ODA 사업 (국제기구 고용휴직제)
심사 자문관 (IP Examination Advisor) 파견 (퇴직 심사관 포함 민간 전문가)	2.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3. 신규 심사 ODA 사업 4. 민간 전문가 공직파견제도 (인사혁신처)	7. WFK 자문단 (KOICA 자문단, NIPA 자문단)

*[부록 5] 심사 ODA 사업 추진 유형별 설명 자료

□ 심사 ODA 사업모델의 우선 순위

- 심사업무 특성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이 높음
- 심사업무 특성 반영 가능성, 협의·파견과정의 특허청 주도 가능성이 높으며, 제약 요건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제약 요건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정도 비교적 용이함
- WIPO 한국신탁기금의 연도별 공여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심사관 또는 심사자문관 파견 규모의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매우 높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신탁기금을 활용한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심사관 역량 강화 지원 경험에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2~'26년 중기전략(Medium-term Strategic Plan (MTSP))에서 신탁기금을 활용한 회원국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임
- * 목표 4(Pillar 4) 성장·발전의 도구로서 IP 이용 지원 중 지식재산을 활용한 회원국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 지원 부문
- 무엇보다도 그동안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심사관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다는 것이 장점임
- * WIPO-KIPO 특허법·특허심사과정 운영, 한-WIPO 인공지능과 지식재산(AI & IP) 교육 운영 등
- * 심사관 역량 강화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 등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이 WIPO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추진
- 심사관 또는 심사자문관의 파견에 따른 비용(직접 인건비, 현지 활동비, 핵심 활

- 동 추진 비용), 현재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하면 특허청의 신탁기금 공여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파견 2명을 기준으로 연간 소요 비용은 2.75억 원으로 예상
 - WIPO 한국신탁기금의 연도별 공여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심사관 또는 심사자문관 파견 규모의 제한은 있을 수 있음
- o WFK 자문단을 활용한 심사자문관 파견도 추진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수요 요청과 분야, 직종의 일치성 등도 고려 필요
- WFK 자문단은 직접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단신부임 원칙의 파견(봉사) 사업으로 현지생활비, 주거비, 현지활동 지원비 형태로 경비 지급
 - WFK NIPA 자문단 해외파견사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산출(전문가 '3급', 지역 '다 등급' 기준)하면 최대 51,240 USD (현지 활동 지원비 제외 시 42,840 USD)임
- * 생활비(최대 26,640 USD), 주거비(최대 16,200 USD), 현지 활동 지원비(연간 최대 8,400 USD) 등으로 고려 가능한 다른 형태의 심사 ODA 추진 방식에서 지급 가능한 체재비 및 현지 활동 지원비 수준임. 즉, 직접 인건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
- 선정된 전문가(자문단원)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고,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KOICA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의 활동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될 수 없는 제한도 있음
 - 또한 WFK 자문단원은 파견국이 요청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해당 자문단 모집 공고 시점에 퇴직하였거나 해외 파견일 이전에 퇴직 예정이어야 한다는 요건(NIPA 자문단에 해당)도 있어 다른 사업 추진 방식에 비해 제한 요건이 많음
- o 발명진흥회(KIPA)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이 WFK 자문단 시행기관으로 신규 진입하는 방안(월드프렌즈 KIPA 자문단)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자문단 시행기관이 되면 자문단원 파견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협력대상국에 대한 자문단원 파견 수요조사 등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지고, 개발도상국 심사역량 강화 등 특허청의 고유 업무(기능)과 연계된 사업추진 효과 창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WFK 자문단 시행기관으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도 총괄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문단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직(예정)자 파견, 직접 인건비 미지급 등 제한 요건의 변경 가능성은 매우 낮음
- o 현 시점에서는 WFK 자문단 형태의 사업 추진 보다는 심사 ODA 사업 목표 및 핵심 활동을 포괄하는 신규 ODA 사업 추진이 더 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이 높다

고 할 수 있음

추진 유형(방식)	심사업무 특성 반영 가능성	협의·파견과정의 특허청 주도 가능성	제약 요건 강도 및 변경 가능성	사업(파견) 규모 및 지속가능성	우선 순위
1. 공무원 파견제도 (인사혁신처)	○	○	△	△	4
2.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	◎	○	◎	1
3. 신규 심사 ODA 사업	◎	◎	△	◎	2
4.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도 (인사혁신처)	○	○	△	△	4
5.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	△	△	◎	3
6. 인사혁신처 ODA 사업 (국제기구 고용휴직제)	△	○	△	△	6
7. WFK자문단	○	△	△	○	4

◎: 반영 가능성 높음, 주도 가능성 높음, 강도 낮거나 변경 가능성 높음, 지속가능성 높음

○: 반영 가능성 보통, 주도 가능성 보통, 강도 또는 변경 가능성 보통, 지속가능성 보통

△: 반영 가능성 낮음, 주도 가능성 낮음, 강도 높거나 변경 가능성 낮음, 지속가능성 낮음

6) 심사 ODA 실행 방안

6.1.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 WIPO 한국신탁기금은 다자성양자(non-core/multi-bi)이기 때문에 심사 ODA 사업 추진 방식으로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 WIPO 한국신탁기금(FIT Korea: Funds-in-Trust Korea)의 성격

- WIPO 한국신탁기금은 다자협력과 양자원조의 성격을 모두 갖는 다자성양자(non-core/multi-bi)로 분류
- 기여 재원에 대한 공여국의 통제 수준과 용도 특정 여부에 따라 순수다자(core)와 다자성양자(non-core/multi-bi)로 구분되는데 다자성양자는 수혜 대상 국가와 분야 등 용처를 특정하여 기여하는 재원임 (OECD DAC 통계상으로는 양자(bilateral) 원조로 분류)

- * 신탁기금은 수원국과 용도를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양자원조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국제기구에 기금을 제공하여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다자원조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OECD DAC 통계기준상 ODA의 분류 >



- o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재원의 용도나 수원국(기관), 수혜자 등을 특정 가능
- 다자성양자(non-core/multi-bi)인 WIPO 한국신탁기금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재원의 용도나 수원국(기관), 수혜자 등을 특정할 수 있음
- WIPO 한국신탁기금은 재정기여 방식으로 구분하면 자발적 기여금 중 지정 기여금에 해당
- * 공여국이 재원의 용도를 사전적으로 지정한 기여금으로 공여국 정부 등이 국제기구 사업 범위 내 특정 국가·지역 또는 이슈에 대한 개발 활동에 사용토록 위탁하는 기금임
- * 신탁기금의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WIPO와 신탁기금 협정을 체결

□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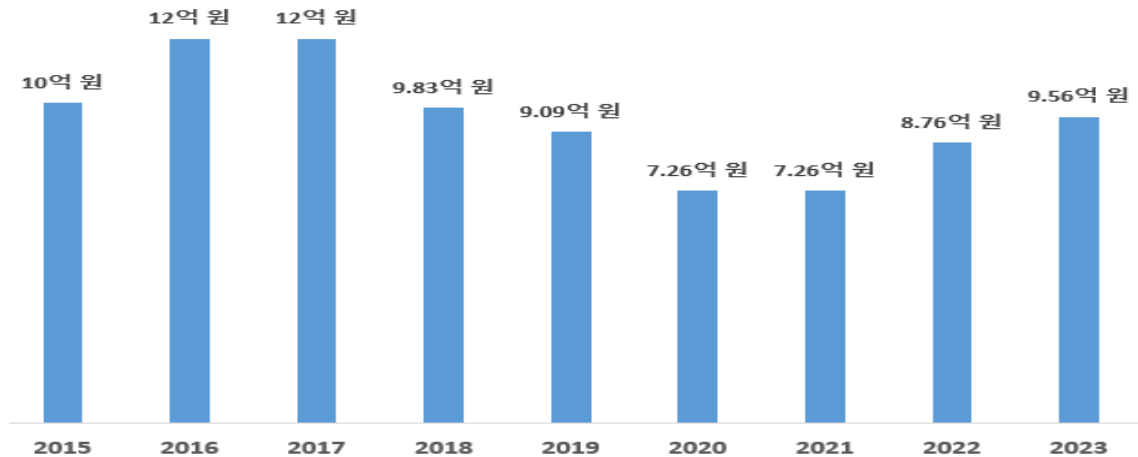
- o 신탁기금의 장점
 - 공여국은 순수다자(core)와 달리 특정 분야, 국가 등 지정기여가 가능하고, 분쟁지역 등 양자지원이 어려운 상황 등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음
 - 또한 공여국은 국제기구의 인적자원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여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국제기구를 통해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제기구는 부족한 정규재원 보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발수요를 지원할 수 있음
- o WIPO 한국신탁기금의 장점
 - WIPO 한국신탁기금은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등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이후 '23년말까지 20년간 총 180.76억 원('23년 8.76억 원)을 공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80여개 사업을 추진
 -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MIPD) 과정 개발·운영, 발명왕 뿌로로 등 어린이 발명 콘텐츠 보급, WIPO 전문가 IP인증 과정, 한-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summer

school on start-up) 교육과정, 심사관 교육 등 오프라인 과정 운영, UNESCO 여성 과정 운영 등 많은 성공적 지원 사례를 창출

o 한국은 WIPO 193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신탁기금을 공여

- '23년 기준으로 WIPO 신탁기금 규모는 일본이 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 19억 원(특허청 9억 원, 문체부 10억 원), 중국 16억 원, 프랑스 3억 원 등임

< WIPO 한국신탁기금 연도별 예산 >



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기전략(Medium-term Strategic Plan(MTSP) 2022-2026)에서 신탁기금을 활용한 회원국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

- 목표 4(Pillar 4). 성장·발전의 도구로서 IP 이용 지원

* 지식재산을 활용한 회원국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 지원: 신탁기금을 활용한 회원국의 지속적 협력 등

o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심사관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창출

- WIPO-KIPO 특허법·특허심사과정 운영

* 개발도상국의 특허심사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진행

* 특허 실체 심사 및 특허검색 전략 등 다수의 주제를 교육하고, 과정 종료 후에는 참여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OJT 과정을 구성하여 특허심사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함

- 한-WIPO 인공지능과 지식재산(AI & IP) 교육 운영과 개발도상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심사 지원

* '21년에 처음 개설(WIPO-KIPO Interactive Online Workshop on AI & IP)되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심사제도와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을 교육

* '24년도부터는 개발도상국 특허청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 추진 방안

- 한국신탁기금 사업계획(KTF Workplan)에 개발도상국 심사역량 강화 지원 사업(심사 ODA) 제안
-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심사 ODA 담당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파견 성과를 바탕으로 갱신 여부 결정
- 비용 부담
 - 매년 특허청 신탁기금 17.3만 스위스프랑(약 2.75억 원) 부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심사 ODA 담당 기관은 현물 부담
 - * 파견 2명을 기준으로 연간 소요 비용은 2.75억 원으로 예상
- 심사관 또는 심사자문관 2명 파견, 파견 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파견 국가(IP office) 및 파견 인력 수 등을 결정
- 운영위원회는 기관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

□ PDM (Project Design Matrix)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비고
1. 개발도상국 특허청(IP office)이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행정기관으로 도약 -심사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지식재산 친화적인 심사 체계 구축 2. 효과적이고 투명한 지식재산 심사제도 운영, 심사제도 국제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산업기술 발전 촉진 -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심사 품질 향상, 심사 기간 단축 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 강화 -심사제도 국제화를 통해 지식재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 FA 기간 단축, 심사관 업무 효율성 향상, 심사 품질 평가 점수 향상 2.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지표 개선	기초선 조사 결과 중간선, 종료선 결과 사업보고서(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심사품질 종합평가, 개별평가 보고서)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보고서	
1. FA 기간 단축 2.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3. 심사 품질 종합평가·개별평가 향상	1. FA 기간 10% 단축 2.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20% 향상 3. 심사 품질 종합평가·개별평가 점수 각각 10% 향상	기초선 조사 결과 중간선, 종료선 결과 사업보고서(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심사품질 종합평가, 개별평가 보고서)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비고
4.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심사제도 운영	4.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제도' 지표 중 '규제 환경' 평가 개선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보고서	
1. 심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와 만족도 2. 심사 품질관리 툴(tool) 개선(개발) 3. 심사 제도 개선 자문 및 제도 개정	1.1. 역량 평가를 시행한 심사자 수 1.2.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 심사 기본 교육 참여 심사관 수*0.5 + 선행기술조사 및 통지서 작성 방법 교육 참여 심사관 수*1.0+개별 심사 건 자문 및 1:1 자문 참여 심사관 수*2.0 1.3.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심사 기본 교육 만족도*0.5 + 선행기술조사 및 통지서 작성 방법 교육 만족도*1.0+ 개별 심사 건 자문 및 1:1 자문 참여 만족도*2.0 1.4.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1.5.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만족도 2.1. 개선(개발)한 심사 품질관리 툴(tool)의 수 * 심사 품질관리 매뉴얼, 심사 품질에 대한 출원인 및 대리인의 품질 평가 조사표 등 2.2. 심사 품질평가(종합평가, 개별평가) 수행 횟수 2.3. 심사 품질관리(EQM) 체계에 대한 ISO9001 인증 2.4.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문 보고서 3.1.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심사 제도 개선 자문 보고서 3.2. 자문 보고서에 따른 심사 제도 개선 수 3.3. 국제 이해관계자(출원인, 대리인 등) 접근성 지원 가이드라인	사업보고서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Examiners Capacity Building) 1-1 기술 분야별 그룹교육 워크숍 등 포괄적 역량 강화(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1-2 심사관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 기간: 2025년~2026년 총 사업비: 5.5억 원 (연간 2.75억 원) * 파견 심사자문관(심사관) 직접 인건비: 2.74억 원 * 현지 활동비: 1.64억 원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비고
기획·운영 1-3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별 심사 건 자문 및 심사관-멘토 매칭을 통한 1:1 자문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자문 (Examination Quality Management Consulting) 2-1 심사 품질관리 매뉴얼, 고객(출원인 및 대리인) 품질평가 조사표 등 심사 품질관리 툴(tool) 구축 및 개선 자문 2-2 심사 품질관리 툴을 활용한 품질평가 실행 및 결과에 따라 개선 사항 자문 심사제도의 국제적 조화 지원(Examination Standards Harmonization) 3-1 심사 기준.지침 등 심사 제도의 국제 적 조화 자문 3-2 심사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 제조약 가입 지원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4-1 활동 보고서 작성 및 특허청(KIPO), 수원국 특허청(IP office) 보고(제출) 4-2 핵심 활동, 프로그램별 성과 및 만족 도 분석	* 핵심 활동별 사업비: 1.12억 원		

6.2. 신규 심사 ODA 사업 추진

☐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심사 품질 향상 지원 활동 등 6개 활동으로 구성 요
소로 하는 심사 ODA 사업 설계

o 사업 기간 2년, 총 사업비는 17.5억 원

- 2개국 4명의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1회 (10명) 기준

☐ PDM (Project Design Matrix)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비고
1. 개발도상국 특허청(IP office)이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행정기관으로 도약 -심사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한 지식재산 친화적인 심사 체계 구축 2. 효과적이고 투명한 지식재산 심사제도 운영, 심사제도 국제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1. FA 기간 단축, 심사관 업무 효율성 향상, 심사 품질 평가 점수 향상 2.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기초선 조사 결과 중간선, 종료선 결과 사업보고서(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심사품질 종합평가, 개별평가 보고서)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비고
산업기술 발전 촉진 -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심사 품질 향상, 심사 기간 단축 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 강화 -심사제도 국제화를 통해 지식재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Index) 지표 개선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보고서	
1. FA 기간 단축 2.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3. 심사 품질 종합평가·개별평가 향상 4.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심사제도 운영 5. 초청 연수 결과 현업 적용	1. FA 기간 10% 단축 2.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20% 향상 3. 심사 품질 종합평가·개별평가 점수 각각 10% 향상 4.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제도' 지표 중 '규제 환경' 평가 개선 5. 초청 연수 결과 현업 적용도 85점 이상 *초청 연수 만족도*0.3+연수 성취도*0.3+이행계획(Action Plan) 영향력*0.4	기초선 조사 결과 중간선, 종료선 결과 사업보고서(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심사품질 종합평가, 개별평가 보고서) 초청 연수 결과보고서 연수자 이행계획서(Action Plan) 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보고서	
1. 심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와 만족도 2. 심사 품질관리 툴(tool) 개선(개발) 3. 심사 제도 개선 자문 및 제도 개정 4. 초청 연수 이수자와 만족도	1.1. 역량 평가를 시행한 심사자 수 1.2.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 심사 기본 교육 참여 심사관 수*0.5 +선행기술조사 및 통지서 작성 방법 교육 참여 심사관 수*1.0+개별 심사 건 자문 및 1:1 자문 참여 심사관 수*2.0 1.3. 3단계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심사 기본 교육 만족도*0.5 + 선행기술조사 및 통지서 작성 방법 교육 만족도*1.0+ 개별 심사 건 자문 및 1:1 자문 참여 만족도*2.0 1.4.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참여 심사관 수 1.5. 포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만족도 2.1. 개선(개발)한 심사 품질관리 툴(tool)의 수 * 심사 품질관리 매뉴얼, 심사 품질에 대한 출원인 및 대리인의 품질 평가 조사표 등 2.2. 심사 품질평가(종합평가, 개별평가) 수행 횟수	초청 연수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비고
	2.3. 심사 품질관리(EQM) 체계에 대한 ISO9001 인증 2.4.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문 보고서 3.1.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심사 제도 개선 자문 보고서 3.2. 자문 보고서에 따른 심사 제도 개선 수 3.3. 국제 이해관계자(출원인, 대리인 등) 접근성 지원 가이드라인 4.1. 초청 연수 이수자 수 4.2. 연수 결과 현업 적용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 4.3. 초청 연수 결과보고서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Examiners Capacity Building) 1-1 기술 분야별 그룹교육·워크숍 등 포괄적 역량 강화(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1-2 심사관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1-3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별 심사 건 자문 및 심사관-멘토 매칭을 통한 1:1 자문 심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자문 (Examination Quality Management Consulting) 2-1 심사 품질관리 매뉴얼, 고객(출원인 및 대리인) 품질평가 조사표 등 심사 품질관리 툴(tool) 구축 및 개선 자문 2-2 심사 품질관리 툴을 활용한 품질평가 실행 및 결과에 따라 개선 사항 자문 심사제도의 국제적 조화 지원(Examination Standards Harmonization) 3-1 심사 기준·지침 등 심사 제도의 국제적 조화 자문 3-2 심사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지원 초청 연수(Invitational Training) 4-1 초청 연수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4-2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 및 이행계획(Action Plan) 작성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5-1 활동 보고서 작성 및 특허청(KIPO), 수원국 특허청(IP office) 보고(제출) 5-2 핵심 활동, 프로그램별 성과 및 만족도 분석	KOICA 사업 기간: 2027년~2028년 총 사업비: 17.5억 원 (연간 8.75억 원) * 파견 심사자문관(심사관) 직접 인건비: 5.48억 원 * 현지 활동비: 3.28억 원 * 핵심 활동별 사업비: 7.1억 원 * 프로젝트 관리비: 1.64억 원		

[부록 1] 심사 ODA 사업 모델 정의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

□ 지식재산(IP) ODA의 목표와 정의

- (목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IP-divide)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활용을 지원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식재산기본법 제37조)
- (IP ODA 정의 사례)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주체가 되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창출·보호·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한유진, 2013)
-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와 목표

개발협력 세부 분야	개발협력 세부 분야별 목표	SDGs 연계	핵심 지식재산	기존 ODA 사업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지식재산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또는 선진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처리 기간 단축 -지식재산 출원 편의성 증대를 통한 지식재산 출원의 양적 확대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처리 불확실성 해소와 품질 제고	8/9	전체	컨설팅
지식재산 정책·행정 체계	-지식재산 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강화 및 기관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강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 마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관련 법령 정비	16	전체	컨설팅/ KSP
지식재산 국제화	-지식재산 국제협력(지식재산 국제기구, 지역(대륙)별 공동체 등) 강화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17	전체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연구개발 활동과 특허전략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특허 창출 확대 및 우수 특허 확보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 지원	8/9	특/실	나눔/ 과학
지식재산 인력	-지식재산 전문인력 자격제도 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 -심사·심판 인력의 역량 강화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연구인력, 기업 실무인력 등 지식재산 업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식재산 인력 역량 강화	4,8	전체	컨설팅
지식재산	-지식재산 교육 저변 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교육 이수자	4	전체	콘텐츠

교육	확대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발명교육 확대			
지식재산 정보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촉진 -지식재산 관련 통계 생산 및 활용 촉진	8/16	전체	과학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16/ 17	전체	-
지식재산 중심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브랜드 개발, 권리화 촉진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 확보 및 활용 강화	8/9	상/디	나눔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자원 등의 보호·육성	-신품종의 개발 및 보호 강화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 자원 등의 보호·권리화, 육성 체계 정립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인 지원 강화	2/15	생	나눔
지식재산 중심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권리화 촉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 및 출원인의 양적 확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도입 확대	8/9	특/실/ 상/디	나눔
지식재산 중심 대학·연구기관 지원	-지식재산 기반의 산학연협력 강화 -대학·연구기관 특허출원 건수 및 발명자의 양적 확대 -대학·연구기관 지식재산 관리·활용 역량 강화 -대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도입 확대	9	특/실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존중 문화 조성 -일반 국민의 지식재산 접근성 강화	16/ 17	전체	콘텐츠

*특=특허, 실=실용신안, 상=상표, 디=디자인, 생=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자원

*컨설팅=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 나눔=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과학=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 지식재산 분야 사업, 콘텐츠=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

※자료: 이성상(2023)

□ KOICA 공공행정(거버넌스·평화) 중기전략 (2021-2025)

- KOICA는 협력대상국의 공공행정 분야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행정 분야를 'KOICA 5대 중점 지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지원
- '공공행정 중기전략(2021~2025)' 수립을 통해 행정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 시스템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지원
- 공공행정(거버넌스·평화) 중기전략 (2021-2025)의 4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책임

있고 효율적인 행정제도'는 행정서비스 현대화 및 운영 역량 강화, 공공재정 및 경제 운영 역량 강화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며, SDG 16.6과 연계

- SDG 16.6: Develop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제도 구축)

*지표: 공공서비스에 만족하는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satisfied with their last experience of public services) 등

□ 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지식재산 정책,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5-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 신흥·개도국은 IP 심사 협력체계 구축 등 IP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사업 지원 등 국가 간 협력 희망
 - 글로벌 IP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IP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외연 확장을 위해 민관 협력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신흥국·저개발국에 대한 IP 행정 컨설팅 지원 및 전문 행정인력 파견 확대를 통해 한국형 행정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10.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특허 출원 세계 4위의 IP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IP 분야 국제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한국형 IP 행정서비스 등의 해외 보급 확대
- * 개도국 IP 행정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개도국 공무원 초청 훈련 및 글로벌 IP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IP 행정역량 강화 지원
- '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 전략시장으로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
 - (중동) 심사 대행 및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지속 확대하고, 특허정보 분석·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IP 교육 등으로 협력 다각화
 - (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별 맞춤형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기전략(Medium-term Strategic Plan(MTSP) 2022-2026)

- (비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혁신과 창의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 목표 3(Pillar 3). 고품질의 IP서비스 제공
 - IP행정에 인공지능 등 최첨단기술을 각국 지식재산관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목표 4(Pillar 4). 성장·발전의 도구로서 IP 이용 지원
 - 지식재산관청을 위한 보다 향상된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각국 지식재산관청이 완

- 전히 디지털화된 등록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회원국의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 혁신 및 창의 환경의 개발: 균형 잡히고 강력하며, 최신의 IP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식재산을 활용한 회원국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 지원: 신탁기금을 활용한 회원국의 지속적 협력 등

[부록 2] 지식재산 심사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간 협력 사례

□ 사우디아라비아 심사역량 강화 지원 사례

- o 한국 IP 전문가 SAIP(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파견 프로그램으로 진행
- o 심사품질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심사관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실시를 통한 특허심사 품질 확보, 법령·제도 고도화 및 조약 가입 지원 등을 목표로 진행
- o IP5 수준의 심사품질관리체계 도입·시행
 - 심사품질관리(EQM) 체계 고도화: 정책목표, 거버넌스 및 절차의 수립 등 품질 관리 종합 매뉴얼 제정 및 심사품질평가(전수평가) 시행
- o 심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심사관별 심사역량을 분석하여 심사관-멘토 매칭 및 1:1 자문
 - 기술 분야별 그룹교육·워크숍 등 포괄적 역량강화(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안·실시
- o 정책 자문 및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강화, 국제적 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컨설팅 등

□ UAE 특허 심사대행 사례

- o 'UAE 실체심사 대행 시행에 관한 MOU' 체결('14.2월)
- o UAE 현지 심사관 파견 및 특허 심사대행 개시('14.6월)
 - UAE 심사관 파견 및 심사대행은 한 국가의 특허심사를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 파견된 심사관이 수행한 세계 최초 사례이었음
- o 심사보고서 양식 및 심사매뉴얼 작성
 - 오스트리아 특허청이 사용하고 있던 심사보고서 양식 및 PCT 조사보고서, UAE 특허법 등을 기초로 심사보고서 양식 작성
 - PCT 국제조사 보고서 및 예비심사 작성 기준을 기초로 UAE 특허제도에 적합한 심사 매뉴얼 제작

- (국내 심사대행) 국내에서 실체 심사를 수행하여 UAE에 송부
 -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실체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과별 UAE 전담 심사관이 검수 및 평가 실시
 - 조사원을 대상으로 UAE 특허제도 및 외국 심사이력 조회방법을 교육하고, 심사보고서 오류 유형을 공유하여 조사 품질 제고
- * 국내 실체심사대행 수수료를 통한 외화 수입 발생
- (UAE 파견단) 파견된 심사관들이 실체 심사를 직접 수행
 - 현지 심사대행을 통한 심사관 인건비 수입 창출
- UAE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
 - 심사료 납부 요청서 조기 발송제도 도입, 청구항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우선심사제도 도입, 분할출원제도 도입 등

□ WIPO 한국신탁기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개발도상국 심사관 역량 강화 등)

- WIPO-KIPO 특허법·특허심사과정 운영
 - 개발도상국의 특허심사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으로 추진
 - 한국의 특허제도와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특허 실체 심사 및 특허검색 전략 등 15개 주제를 다룸으로써 개발도상국 특허심사관들이 한국의 특허제도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허법원 등의 견학을 통해 한국의 특허심사 및 심판 환경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과정 종료 후에는 참여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OJT 과정을 구성하여 특허심사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함



*자료: 특허청 공식 블로그



- 한-WIPO 인공지능과 지식재산(AI & IP) 교육과 개발도상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심사 지원
 -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으로 특허청에서 제안하고, WIPO와 협력하여 '21년에 처음 개설 (WIPO-KIPO Interactive Online Workshop on AI & IP)

- * 인공지능과 관련된 심사제도와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AI가 지식재산권 및 특허행정에 주는 영향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
-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심사 전담 조직 신설, 법제 및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협력으로는 최초로 개설된 AI 관련 교육과정
- * 우리 특허청은 '20년 12월에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선행기술검색엔진 등 특허행정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음
- * 우리 특허청의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제도 및 심사 노하우를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가 미비한 국가에 전파
- '23년에는 생성형 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AI가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
- '24년도부터는 개발도상국 특허청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 * '24년 4월 특허청과 WIPO의 인공지능(AI) 전문가가 필리핀 특허청을 방문하여 심사관 대상 AI 심사 검색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교육 진행 및 파일럿 시스템 개발 지원
- * 향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국가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
- (기타 참고 사례)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
 -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을 연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석사학위 과정
 - *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경제·문화 발전이 강조됨에 따라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교육과정 설립 추진
 - * 2019년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세종시가 업무협약 체결
 - 주요 교과과정은 지식재산 일반론, 개발정책, 지식재산과 지속가능한 개발, 혁신성장 전략 등으로 구성
 - * WIPO 원격교육(온라인), 국제지식재산법 및 개발, 특허와 혁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식재산 관리 및 실습, 한국경제개발 등을 주요 교과목으로 운영
 - *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개도국의 기술혁신과 창의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업무협약 1기라고 할 수 있는 '20~'22년까지 총 31개 국가에서 공무원, 지식재산 인력 등 교육생 53명이 참여
 - 23년 2월에는 새롭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업무협약 체결
 - *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간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MIPD)을 위해 매년 특허청 신탁기금 10만 스위스프랑(CHF), 문화체육관광부 신탁기금 9만 스위스프랑(CHF)을 부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은 현물 부담

*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교과과정을 운영

o (기타 참고 사례) ‘한-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Summer School on Start-up)’ 교육과정 운영

- 특허청이 WIPO와 협력하여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08년부터 개설·운영

- 전 세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3년까지 120여 개국에서 611명이 수강하며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에 기여

[부록 3]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문가 등급별 비용 지급 기준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2023.7.13. 개정)

o 전문가의 정의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조사, 시행, 평가 등에 관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파견 혹은 현지에서 선발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활용하는 인력

o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유형

- 직접 인건비, 기술료, 특수지 가산금, 직접경비(항공료, 체재비,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현지활동지원비, 기타 경비)

*직접 인건비는 전문가의 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구분	자격 요건
1급	- o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o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o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o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o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o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o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o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o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o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o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o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o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00,000	310,000	260,000	230,000	200,000	16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함

-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국가	적용 요율
특수지 '가'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역 국가	15%
특수지 '나'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나" 지역 국가	10%
특수지 '다'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다" 지역 국가	5%

- 체재비는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

1. 30일 이내 기간: 전문가 체재비 기준에 따른 1인당 체재비
2. 30일 초과 60일 이내 기간: 제1호 체재비의 80/100 지급
3. 60일 초과 기간: 제1호 체재비의 70/100 지급

(단위 : US\$)

직급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2급	가	35	190	107	332
	나	35	136	78	249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3급 이하	가	30	150	81	261
	나	30	116	59	205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 현지 활동지원비는 필요에 따라 실비로 지원

* 활동물품지원, 일반활동지원, 사무기기 등,

[부록 4] WFK NIPA 자문단 해외파견사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경비 지급 기준

□ 선정된 전문가(자문단원)에 대한 경비 지급 기준

○ 출·귀국준비금

- 자문단원의 출국 및 귀국 준비를 위하여 120만원을 준비금으로 지급
- 자문단원은 출·귀국준비금을 예방접종, 국·내외 탁송, 공항교통비 등 자문단원 해외 파견에 필요한 제반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지 생활비

- 자문단원이 출국하는 날부터 현지 활동을 마치고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 생필품 구매, 출퇴근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최소생활비 지원을 위한 현지 생활비를 지급

○ 주거비

- 자문단이 현지에 입국하는 날로부터 현지 활동을 마치고 파견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거비를 지급

자문단원 경비 기준	
일식비	KOICA 3급 전문가(관련 경력 10년 이상 자격) 일·식비 기준
주거비	

자문단원 일·숙박비 기준(지역별) (단위: USD)

등급	일비	숙박비	계
나	30	58	88
다	30	45	75
라	30	35	65

자문단원 생활비 및 주거비(실비 상한액) 기준 (단위: USD)

지역 등급	생활비	주거비	해당 국가
나	2,670	1,740	인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파푸아뉴기니,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다	2,220	1,350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나이지리아,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알제리, 요르단,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벨리즈, 피지
라	2,010	1,035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

			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타지키스탄,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르완다, 튀니지, 말라위
--	--	--	---

○ 현지 활동 지원비

- 활동물품 지원: 현지 소속기관 및 현지 직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 또는 자문활동과 관련한 활동기자재(사무기기 제외) 구입비, 자문 활동과 관련한 도서 및 자료 구입 등
- 일반활동 지원: 자료인쇄비, 통역·번역료, 현지 보고회, 회의비, 출장비 등
- * 회의비는 현지 활동 지원비 상한액의 20%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
- 모든 현지활동지원비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현지 활동 지원비 지급 기준	
현지 활동 지원비	연간 US\$ 8,400
	매월 US\$ 700

[부록 5] 심사 ODA 사업 추진 유형별 설명 자료

□ WIPO 한국신탁기금 활용

- WIPO 한국신탁기금(FIT Korea: Funds-in-Trust Korea)은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등을 위해 2004년에 설립
- '01년 11월에 특허청과 WIPO 간 기본협력 협정(9개 조항)이 체결되었으며, '04년 6월에 WIPO 신탁기금 설치를 위한 기관 간 약정(11개 조항) 체결
- WIPO 한국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지원 사업 제공
- WIPO 한국신탁기금은 다자협력과 양자 원조의 성격을 모두 갖는 다자성양자(non-core/multi-bi)로 분류되며, 순수다자(core)와 달리 수혜 대상 국가와 분야 등 용처를 특정하여 기여하는 재원임
- * 자발적인 출연금은 통상 핵심 기금(core-fund)과 비핵심기금(non-core fund)로 구분되는데 핵심 기금은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발적 출연금이며, 비핵심 기금은 공여국이 제시하는 수원국(기관)과 용도 등에 구속되는 조건부 출연금임
- * 용도를 지정하고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비핵심 특별예산자원(nor-core extra budgetary resources)이라고도 하며, 비핵심기금은 비용분담기금(cost-sharing fund), 신탁기금(trust fund), 국제기구가 관리를 맡고 있는 기금(international organizations-administered fund)으로 구분
- 특허청은 2004년부터 23년말까지 20년간 총 180.76억 원을 공여하여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와 공동으로 180여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도 WIPO 193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신탁기금을 공여하고 있음

○ 주요 사업

-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MIPD) 과정 개발·운영, 고위 공무원 대상 UNIDO 산업개발과 지식재산 과정 운영, 써머스쿨·심사관 교육 등 오프라인 과정 운영 등 IP 개발 역량 강화 사업
- 국제 IP전문가 인증과정(AICC) 운영, 중소기업 등을 위한 교육모듈 IP 파노라마 2.0 개발, UNESCO 여성과정 운영, IP-R&D 기반 창업·혁신 과정 운영 등 IP 활용역량 강화 사업
- 블록체인 백서 및 영업비밀 백서 발간, 발명왕 뽀로로 등 어린이 발명 콘텐츠 보급 등 IP 인식 제고 사업

□ 공무원의 파견근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 *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파견 절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 중 제6호에 따라 파견 시 심사 ODA와 연계 가능
-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분	기간	파견대상 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

- 제6호 규정에 의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필요하며, 파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음

○ 파견자의 복무 등

-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결원 보충 가능
-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

-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파견 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

○ 파견자에 대한 보수

- 파견자에 대한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근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 *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

-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민간기관) 임직원
-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은 파견 불가

○ 파견 절차

- 소속 장관은 민간전문가 파견적정성 등에 대해 소속장관 검토 후,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받음
- 소속 장관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 사실 통보

○ 파견 기간 및 복무

- 2년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파견자에 대한 복무는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식

○ 파견자에 대한 보수

-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지급 가능
- 현지 활동비 등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 인사혁신처 ODA 사업 (국제기구 고용휴직제)

○ ODA 사업 목적

-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하여 국제현안 해결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제고
- 정부 ODA 정책과의 부합 여부
- * 고용휴직제도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함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인적 기여 추진

○ 사업 예산

- 2024년 297.8억 원
- 2023년 248.5억 원

○ 심사 ODA 사업의 추진 방식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

-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 ODA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지식재산 관련 국제기구로의 파견 이후 개발도상국 심사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하거나 수요 국가로 재파견되는 형태로 추진 필요

□ 한-아세안 협력기금 (ASEAN-ROK Cooperation Fund: AKCF)

○ 한-아세안 간 양자 관계 강화, 민간 교류 지원 등 한-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1990년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설립

- 한-아세안 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교류, 문화·학술 교류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사업을 지원
- 아세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의 수단으로 다자성 양자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신남방 정책 기조에 따라 2019년부터 연간 지원 규모가 크게 증액되며, 중요성이 확대됨(박민정, 2020)

○ 현재까지 누적 공여액은 2억 200만 달러이며, 462건의 협력 사업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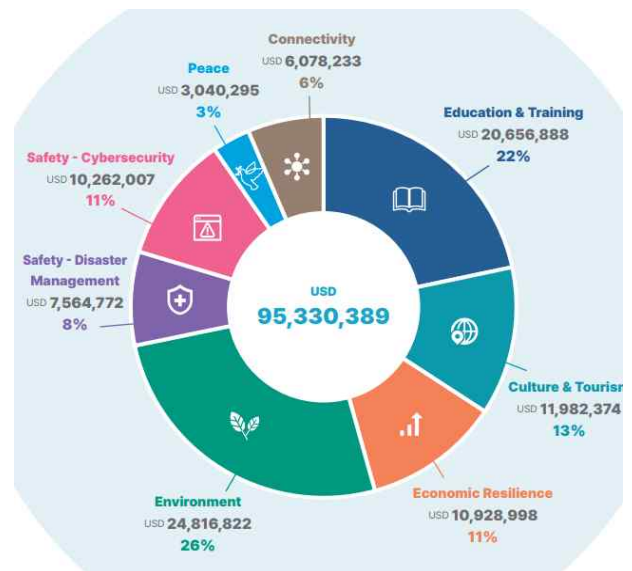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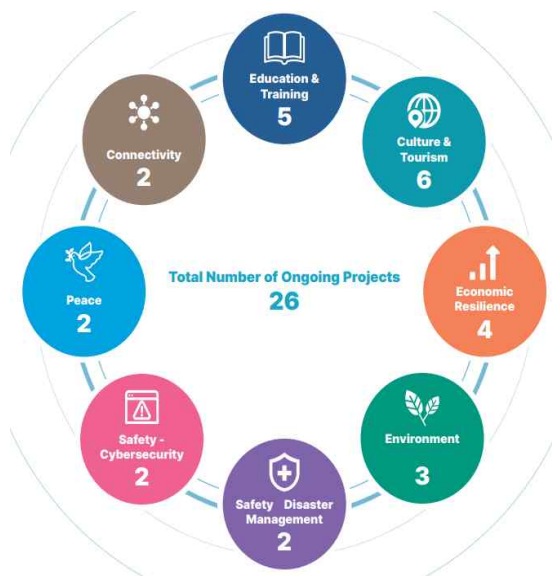
-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지만 우선협력분야(공공보건, 교육·훈련, 경제 회복력, 환경·안전과 평화)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 수행
- 누적 공여액을 '27년까지 3억 2000만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

- '23년에는 49개 사업(프로젝트)가 제안(new project proposals) 되었지만 7개 사업은 승인되고, 36개 사업은 철회 또는 거절되었으며, 6개는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 단계에 있음

<최근 5년 간 한-아세안 기금을 통한 승인 사업과 사업비>

연도	승인된 사업(프로젝트) 수	총 사업비(USD)
2019	6	12,586,817
2020	7	25,006,046
2021	2	3,022,796
2022	5	17,449,363
2023	7	40,189,529

- o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젝트)는 26개이며,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6개로 가장 많고, 교육·훈련 분야 사업이 5개임
- 사업비 규모로는 환경 분야가 26%로 가장 많으며, 교육·훈련 분야 사업이 22%



*출처: AKCF, 2023 Annual Report

3. 심사 ODA 사업 후보국 선정 (개도국 수요 예측 및 평가)

가. 지식재산 출원 유형에 따른 국가 분류

ODA	중점협력국	중점협력국	중점협력국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전체 직원	600	300	
특허심사관 수	113	71	102
JPO 심사관 육성 지원 (초청연수,교육등)	o		JPO 전문가 파견
출원~등록까지	36개월	24~30개월	
FA (First Office Action, Day)	60	1026	180
타국가와 심사협력		싱가포르와심사 협력	
한국과 심사협력 (PRP, PPH 등)	PPH	PPH	PPH
IP Agent	IP 컨설턴트	IP Agent	IP Agent (PAQE)
Patent Back log(건수)	27343	32897	15180
특허출원(2015~)	76257	54170	32379
특허등록(2015~)	48914	21273	17199
Backlog 비율	0.358564	0.607292	0.468822
최근 출원 성장률	-3%	4%	2%
등록 성장률		10%	8%
Non-Resident application 비율	일본:24.8% 미국:22.2% 중국:16.8% 한국:5.7% 독일:4.1%	미국: 25.1% 일본:20.4% 중국:17.5% 한국:13.4% 독일:3.5%	미국 : 37.8% 일본:17.1% 중국:9.5% 스위스:5.8% 한국:3.8%
Resident application per 100 billion USDGDP	45.3	80	53.7
GII		48th	
언어	인도네시아, 영문출원가능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심사관련 조약 (PPH등)		베트남 지식재산전략 2030	
최근 5년 간 분야별 출원점유율	특허: 2.14%, 상표: 94.6%, 디자인:3.17%,PCT T:0.01%	특허: 1.2%, 상표: 96%, 디자인:2.8%,PCT :0.03%	특허: 1.85%, 상표: 95.8%, 디자인:2.21%,PCT: 0.08%
특허심사 시스템 구축		O(JICA 지원)	

나. 우리 기업 진출 유형, 기업 수에 따른 국가 분류

o 표준 산업분류별 진출 현황

-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현황을 TOP 10⁶⁾ 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 3657개, 중국 2132개, 인도네시아 1013개, 미국 632개, 일본, 452개, 태국 370개, 인도 276개, 말레이시아 199개, 필리핀 169개, 폴란드 170개로 분석됨
- 제조업 54.4%, 도매 및 소매업 11%, 건설업 8.6%,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
- 특허출원과 관련된 산업분류를 살펴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관련성이 높음

행 레이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총합계
A.농업, 임업 및 어업	30	1	4	35
B.광업	3	6		9
C.제조업	1878	694	63	2635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	7	3	30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6	1	2	19
F.건설업	349	45	24	418
G.도매 및 소매업	439	78	17	534
H.운수 및 창고업	197	38	17	252
I.숙박 및 음식점업	49		3	52
J.정보통신업	113	12	3	128
K.금융 및 보험업	100	18	6	124
L.부동산업	60	4	1	65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1	40	8	199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	25	2	80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	7	1	32
P.교육서비스업	40	3	3	4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1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2	1	9	62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29	2	75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3			13
U. 국제 및 외국기관	7	4	1	12
총 계	3,657	1,013	169	4,839

6) KOTRA, 해외진출 기업현황(20231113)

o 제조업 분야 세부 분류 현황

행 레이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총합계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52	274	1	527
기타 제품 제조업	330	103	3	43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3	27	22	32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8	75		25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2	11	8	18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5	44	4	15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9	21	5	125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5	34	3	1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0	12	5	97
전기장비 제조업	68	16	2	8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8	8		5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24	1	55
식료품 제조업	32	7	4	4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9	12	1	3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11	2	30
1차 금속 제조업	19	2		21
가구 제조업	15	5		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1		1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6			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	3	1	1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	1	1	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1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2		3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			1

○ 투자유형

구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총합계
미분류	1273	878	9	2160
M&A	7	19	2	28
M&A(20%)	1			1
M&A(52%)	1			1
M&A(60%)	1			1
M&A(99%)	1			1
단독투자	2246	98	133	2477
합작투자	110	14	1	125
합작투자(10%)	1		1	2
합작투자(25%)			1	1
합작투자(36%)			1	1
합작투자(40%)			8	8
합작투자(49%)	5			5
합작투자(50%)	2	1	3	6
합작투자(51%)	1		3	4
합작투자(55%)		1		1
합작투자(60%)	1	1	3	5
합작투자(70%)	1		1	2
합작투자(80%)	2		1	3
합작투자(81%)	1			1
합작투자(90%)	2			2
합작투자(95%)		1		1
합작투자(99%)	1		2	3

다. 개도국 수요 예측 및 평가 방법

□ 국제개발협력에서 수요 예측 및 중점 분야 선정 사례

○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사례

- 박영호(2016)의 사례: 지수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으로 아프리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분야를 선정

* 분석 대상국과 벤치마킹 대상국 간 분야별 지수 갭으로 산출되는 수원국의 개발수요 크기와 분석 대상국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수 갭으로 산출되는 우리나라의 공여능력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중점 분야 선정

- 이성상(2023)의 사례: 아프리카 29개 국가별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 발전 정도와 적합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지식재산 개발협력 중점 분야를 도출

* 지식재산 개발협력 발전 정도는 각 지표별로 전 세계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산출

* 적합 수준은 분석 대상 29개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산출

* 지식재산 개발협력 발전 정도가 75~125이면서 적합 수준이 100 이상인 개발협력 분야를 해당 국가의 중점 분야(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

$$D_j^n = \sum_{i=1}^N \frac{IP_{ji}^n}{IP_{ji}^{world}} / N \times 100$$

D_j^n : n 국가의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 j 의 발전 정도 크기

IP_{ji}^n : n 국가의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 j (IP_j^n)의 지표 i 측정 값

IP_{ji}^{world} :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 j (IP_j)의 지표 i 전 세계 평균 값

N :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 j (IP_j)의 지표 i 총 개수

개발협력 세부 분야	중점 분야 국가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가나,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나이지리아)
지식재산 정책행정 체계	기니, 세네갈, 토고, 모리셔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베냉)
지식재산 국제화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튀니지
지식재산 인력	튀니지 (니제르, 짐바브웨)
지식재산 정보화	케냐,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말리, 우간다)
지식재산 중심 소상공인 지원	모잠비크, 나미비아, 튀니지, 모로코 (르완다, 잠비아, 보츠와나)
지식재산 중심 중소기업 지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식재산 중심 대학연구기관 지원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알제리)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모리셔스 (탄자니아, 앙골라)

()은 기준을 충족하는 중점 분야가 없는 16개국 중 발전 정도와 적합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를 표시 ※ 출처 이성상(2023)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활용한 사례

- 유병일·윤보은(2014)의 사례: 산림 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임업 분야별 국제 경쟁력, 우리나라 산림 ODA 우선 중점 분야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 ODA의 추진 방향 제시

□ 심사 ODA 수요 예측 및 평가 방법

- 심사 ODA 사업 후보국이 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심사 ODA 수요 예측 및 평가를 위해 심사 ODA 수요 적합도와 사업 적합도를 측정

- 심사 ODA 수요 적합도: 심사 수요, 심사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도국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심사 ODA 수요 크기를 산출

* 심사관 수, Backlog, FA(First office Action) 기간, 지식재산 출원 증가율(심사 물량), 심사 협력 체결 여부, 출원서 언어 등

베트남 (예시)	특허 심사관	Backlog (최근 4년)		FA 기간	특허출원, 등록 건수				
		건수	비율		'18	'19	'20	'21	'22
	71명	17,958	55.3%	1026 일	922 206	968 232	1074 408	1229 525	1006 49

- 심사 ODA 사업 적합도: 정부·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 중 실제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대상 사업 선정 심사 등에서 활용되는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 ODA 사업의 개도국별 타당성을 평가

* 협력국 정책 연계성(국가개발정책 및 전략상 부합 여부 및 우선순위), 우리 정부 정책 연계성(중점협력국 여부, CPS 중점협력 분야 여부), 정부 기타 정책 연계성(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 주요 외교 및 ODA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등

(예) 인도네시아

- 중점 분야: 교통, **공공행정**, 환경보호,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공공행정 분야 현황 및 특성
 - '20년 UNDESA의 전자정부 개발지수(EGDI) 평가에서조사대상 193개국 중 88위
 - 정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준 등이 낮게 평가
 - 2005-2025 장기국가개발계획(RPJPN) 및 제4기('20-'24) 중기개발계획(RPJMN)의 공공행정 분야 과제
 - * 전자 기반 정부 시스템의 최적화,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부 서비스 고안, 정부와 민간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시스템 통합
-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분야 지원 방안
 - 기본 방향: 공공정책 이행 효율성 및 역량 강화(정부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공공정책 운영 역량 강화)
 - *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인프라·제도적 기반 개선 지원
 - * 정부 효과성·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공행정 분야 역량 강화

IV. 타부처 연계방안

1) 과학기술 ODA

- 한국연구재단에서는 WFK과학기술지원단(TPC) 파견사업,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지원 사업을 과학기술 ODA로 운영 중
- WFK(World Friends Korea)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사업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선발하여 개도국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파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지원하고 있음

<그림>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사업명	WFK* 자문단		NRF	비고
	KOICA 자문단	NIPA 자문단	과학기술자문단**	
부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한국연구재단 (NRF)	
모집공고	https://kov.koica.go.kr/recruit/notice.koica	senior.nipa.kr	https://www.nrf.re.kr/biz/info/notice/list?menu_no=378&biz_no=264	
파견유형	자문단		봉사단	
활동구분	정부 정책·기술 자문, 프로젝트 컨설팅		연구, 교수활동	
파견기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중심		대학, 연구소 중심	
파견분야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지역발전	과학기술	
자격요건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現퇴직(예정)자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만 65세 미만
지원사항	현지 생활비, 활동물품비, 출국정착금, 여학훈련비, 국내정착지원금, 항공료 및 보험료, 기타 제반사항에 따른 비용 등			연간 약 50백만원
활동기간	1년(통합 활동기간 최대 3년)			

- 동 사업은 지원대상 분야 분야 석·박사를 선발하며, 체제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대학교, 연구소 및 기타기관에 파견되어 공동 연구와 과

학기술 관련 교육활동(강의, 기술지도 및 컨설팅) 수행

- 기본 요건에 맞는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심사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교수 등)를 NIPA 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에 참여하여 수원국의 주요 혁신기관에 파견하면 과학기술과-지식재산 ODA를 전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NIPA 자문단

모집 수요	15개국 22개 직종	
활동 기간	1년 (최대 3년)	
지원내용	체재비 및 활동지원비, 현지정착지원금, 항공료, 보험 등 (1인당 약 50~70백만원)	
파견분야	정보통신	ICT 정책, IT보안, 전자정부, 정보통신일반, 통신네트워크
	산업기술	산업기술일반, 고학기술, 농산업기술, 교통통신 등
	에너지자 원	환경정책, 수자원관리, 원자력
	무역투자	무역투자일반, 투자진흥, 무역진흥
국가	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몽골, 동티모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아프리카	르완다, 에티오피아
	중남미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동구/CIS	동구·CIS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림> 과학기술지원단

지원방법	과학기술지원단 TPC(Techno Peace Corps)	
지원대상	해당분야 전공자(석·박사 학위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파견분야	과학기술 전분야(파견 수요별)	
파견기간	1년 (최대 3년)	
활동 내용	개발도상국의 대학교, 연구소 및 기타기관에 파견되어 공동 연구와 과학기술 관련 교육활동(강의, 기술지도 및 컨설팅) 수행	
지원내용	체재비 및 활동지원비, 국내정착지원금, 항공료, 보험(상해보험, International SOS)가입 등 (1인당 약 50백만원)	
국가	아시아	동티모르(자원개발), 태국(대기오염)
	아프리카	탄자니아(기계공학), 에티오피아(핵재료)
	중남미	볼리비아(전자공학, 기계공학)
	중동, 중앙아시아	키르키스스탄(식물육종)

2) 과학기술 국제협력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거점으로는 과기협력센터, KIC(Korea Innovation Center), 해외IT지원센터 등이 있음
- 과기협력센터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협력수요 발굴, 현지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 KIC는 미국(워싱턴, 실리콘밸리), 독일, 중국에 위치하며, 기술사업화와 스타트업을 지원
- 해외IT지원센터는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에 위치하며 정보통신기술분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 거점

구분	기관명	소재지	설치연도	인력	예산 (백만)	관리기관	주요업무
과기협력 센터	한-중 과학기술협력 센터	북경	1993	7	770	연구재단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과제 발굴 기술수준조사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델리	2020	3	375		
	한-아세안 과기협력센터	자카르타	2019	3	488		
	한-러 과기협력센터	모스크바	2007	8	805		
	한-EU 연구협력센터	브뤼셀	2013	6	452		
	북유럽 과기협력센터	스톡홀름	2020	1	454		
KIC	워싱턴	워싱턴	2014	5	950	연구재단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지원 현지 창업, 진출지원
	유럽	베를린	2017	7	900		
	중국	북경	2016	5	1420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2014	9	1400	NIPA	

7) 과학기술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202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12개의 해외조직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해외조직을 두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KIST유럽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유일의 해외분원으로서 54명의 인력을 두고 있음

(단위: 명)

출연연	국가	해외조직	설치 연도	운영 형태	인력(파견)
한국과학기술연구원(2)	독일	KIST유럽연구소	1996	현지법인	54 (2)
	인도	한-인도 협력센터	2010	현지법인	13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4)	중국	한-중 생물소재 연구센터	2007	현지법인	1 (1)
	코스타리카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 연구센터	2008	현지법인	2 (1)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 연구센터	2009	현지거점	2 (1)
	베트남	한-베트남 생물소재 연구센터	2013	현지거점	2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4)	미국	미국기술협력센터	2002	현지법인	2 (1)
	중국	중국사무소	2004	현지법인	3 (1)
	베트남	베트남사무소	2005	현지법인	3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사무소	2006	현지법인	4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2)	중국	북경연구센터	2002	현지법인	2 (1)
	미국	미주기술확산센터	2008	현지법인	2 (1)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해외조직 현황 보고서』, 2021.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는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해외IT지원센터 운영, 국제IT협력프로젝트 운영,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운영, 방송통신 교류촉진 지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전략형국제공동연구사업, 국제협력네트워크전략강화,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 개도국과학기술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국제기구부담금, 과학기술 국제부담금,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등이 있음

부서	사업	목적	예산 (백만)
국제협력 총괄담당관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R&D)	• 해외우수연구기관과 공동연구센터 국내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여, 핵심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5066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R&D)	•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양자 및 다자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해외 선진 기술 확보, 인력 교류 촉진 등 연구역량 강화	3600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R&D)	• 국내·외 한인과학기술자 간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협력을 할 수 있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과학기술 외교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1020
	해외IT 지원센터 운영	•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 컨설팅 등 맞춤형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5056
	국제 IT 협력 프로젝트 운영	• 정보화 정책 추진 국가를 대상으로 상대국과 공동으로 3년간 IT 협력 프로젝트 (정보화컨설팅, 교육, 실증 등) 수행을 통해 우리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양국 우호증진 및 우리 ICT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778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운영	• 정부 간 협력 활동 추진 및 국내 정보통신방송 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신규개척 및 해외 진출 확대	2054
	방송통신 교류촉진 지원	•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WTO, FTA 등 통상협상 시 ICT 분야 대응 전략 수립 및 전략적 협상 지원을 통한 진출대상국의 시장개방 추진	530
미주아시아 협력담당관	국가간협력기반 조성사업(R&D)	•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국제행사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28004
구주아프리카 협력담당관	전략형국제공동연구 사업(R&D)	• 글로벌 문제해결, 국가 전략수요 등의 분야에 대한 선진기술 확보 및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중·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	8500
	국제협력네트워크 전략강화(R&D)	• 기 조성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발전시켜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	750
	개도국정보이용환경 개선 (ODA)	• 개도국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개도국의 디지털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ICT 교육장, ICT 라운지, 영상회의실 등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콘텐츠를 제공 • 해외 I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 개도국 ICT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정보화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산·학·연·관 간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여 ICT 협력 네트워크 구축	3751
	개도국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ODA)	• ICT ODA 관리체계 구축, ICT 기술정책협력,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개발은행 협력지원, K-Lab 설치 및 운영,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	9752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ODA)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특허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	3181
	개도국과학기술지원 (R&D, ODA)	• 개도국 문제 해결을 통한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과제에 한해 지속 지원	892
다자협력 담당관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정보화)	• 주요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협력 기반을 통해 수요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우리 ICT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 강화 • 국제기구 협력기반을 토대로, 협력국 디지털 전환 사업의 기획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후속 사업에 우리 ICT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확대	204
	국제기구부담금 (정보화, ODA)	•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부담금 납부를 통해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위상 제고	4381
	과학기술 국제부담금(R&D)	• 과학기술 정책·제도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과 영국간 협약에 따라 영국 대학에 국내 연수생 파견 및 석사학위과정 운영 관련 부담금 납부 • OECD, GBIF, HFSP, WEF 등 국제기구 주도의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 국제 과학기술 규범 형성에 우리 입장 적극 반영 및 다자간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국내 연구자의 참여 지원	2640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ODA, R&D)	• 메콩강 유역 국가의 물·에너지·식량의 효율적·지속적 생산과 이용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대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지원, 신남방지역 과학기술혁신분야 국제협력 강화 • 아태지역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기술격차 해소 지원 등 과기분야 지속적인 협력기반 강화 및 개도국 발전 지원	988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 국제기구(ITU-OECD 등) 의제 대응 및 정보통신방송분야 최신 정보 교류,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지원	2235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 ESCAP 회원국은 자국의 핵심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구를 유치·지원함으로써 아·태 지역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 • 우리나라는 ESCAP 회원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UN 산하 정보통신 교육기관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여 지원	906

IV. 해외사례 조사

1. 일본 특허청

- 일본은 1987년부터 WIPO에 신탁기금을 출자하고 있으며, 신탁기금으로 'Funds-in-Trust Japan Industrial Property Global(FIT Japan IP Global)'을 운영중
 - 창설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은 2008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되고, 또한 2019년에는 지역의 제한을 없앴 "글로벌 펀드"로 운영 중
 - 36년간 약 100억엔을 출자하여으며, 100개국 이상에 지원
 -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제도정비, 정보화, 인력양성 등 지원
 - * 각국·지역과의 하이 레벨 회담을 실시, 지식재산권 제도·운용·정비를 위한 전문가 파견, 각종 워크숍의 개최, 각국 특허청의 정보화 지원 등
- FIT Japan IP Global은 WIPO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 협력 추진
 - 세계 각국에서 자율적인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혁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고 상업화를 실현
 -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에 관한 제도, 사람, 정보를 연결하여 글로벌 지식재산네트워크를 형성
 - 일반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경제의 발전이나 사회의 활력에 기여
 -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이 전세계에 보급되는 것을 촉진하고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

1) 고위관계자 정책대화

- 협력 관계의 심화와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WIPO, 일본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청 고위관계자들간 회담 실시
 - 2023년 1월, 이집트(카이로)에 있어서, 일본과 아랍 지역의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의 지견의 공유 및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제3회 일-아랍 지재 대화」를 개최
 - * 이 회담에는 이집트,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튀니지,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아랍 연맹, 걸프 협력 이사회 (GCC) 특허청, GCC 지재 연수 대표자가 참가
 -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시스템의 활용」을 주제로 의견 교환.
 - 2023년 5월, 아프리카에서 농업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여성 기업가를 위해 지식재산이 역할을 테마로 「REGIONAL 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FOR WOMEN IN AGRIBUSINESS」 실시

- * 100명이 넘는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참가자들은 농업 사업의 지식 의식을 높이고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지식 지식과 사용 가능한 도구와 자원을 습득
- 2022년 9월, 아프리카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과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 ('Inter-Regional Webinar on IP and Innovation for SMEs')

2) 전문가 파견

- FIT Japan IP Global의 사업으로서 특허협력조약, 헤이그협정, 마드리드 협정의정서(국제등록출원절차조약)에의 가맹촉진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개최
- JPO는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조약 가맹국으로서 조약 가입시 대응이나 운용 정비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고 있음
- 1987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9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전문가 파견을 시작해, 2022년도까지 약 400명의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
-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특허청(MyIPO) 직원을 대상으로, 마드리드 제도의 방식 실무에 관한 JPO의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하여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2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70명이 참가하였음
- JPO는 3명의 강연자가 참가해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제도의 최신 동향, 출원의 심사 실무, 본국 관청·지정 국관청의 방식 실무를 전수
- 2023년 3월에 베트남에서 개최한 마드리드 제도에 관한 회의 실시
-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허청의 마드리드 제도 실무 담당을 대상으로(12개국으로부터 약 30명) 마드리드 제도에 관한 실무의 개선을 향한 논의 실시
- 2022년 12월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카리브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마드리드 제도에 관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
- 또한 개발도상국의 IT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요구에 근거한 연수나 워크숍 개최를 FIT Japan IP Global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JPO 직원을 강사로 파견

- 2022년 12월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ASEAN 5개국의 각 특허청의 IT 담당자 36명이 참가한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워크숍」에서 특허정보의 보급에 대한 JPO의 IT 서비스 발표
- 2023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IPO-ASEAN IT 비즈니스 전략 워크숍에는 ASEAN 국가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3) 인재육성

-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을 위해 FIT Japan IP Global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1) 장기 헬로우십 프로그램

-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아시아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장기 Follow ship 프로그램 실시
-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1명, 아시아 지역의 대학이나 과학 기술 관련 기관에서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직원 등을 일본에 초대해, 3개월간, 오사카 공업 대학* 지적 재산 연구과에서 일본의 산업 재산권 법과 아시아에서 지적재산법을 배우는 연수 기회를 제공
 - * 오사카공업대학, 도쿄이과대학, 도쿄공업대학, 아오야마학원대학, 가나자와공업대학, 니혼 대학 등 6개 대학은 아시아 지식재산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대학
- 2022년도에는 온라인 코스를 실시(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15명이 참가)

(2) 지적재산 석사 프로그램(Master's degree in Intellectual Property(MIP) 프로그램)

- MIP 프로그램은 지적재산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의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한 WIPO Academy가 제공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하나임
- FIT Japan IP Global은 지원 대상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한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MIP 프로그램 중 ARIPO, OAPI 대학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약 12명씩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 (Global의 장학금을 받은 258명)

<그림> MIP 프로그램 수료식 (짐바브웨)



(3) 정보화 지원

- FIT Japan IP Global은 개발 도상국에서 심사를 효율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IT 인프라 개발을 지원
 - 구체적으로는 (1) 출원서류 등의 전자화 지원, (2) 특허청의 사무처리 시스템인 WIPO-IPAS, ASEAN 각청의 공보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ASEAN 지적재산 정보 포털 ASEAN PATENTSCOPE 등 IT 시스템의 개발·데이터 수집 지원, (3) 특허의 출원·심사 정보(도시에 정보)의 공유 시스템인 WIPO-CASE*의 개발·보급 지원, (4) IT 인재 육성을 위해 개발 도상국을위한 IT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지원 등을 실시
- * WIPO-CASE의 개발 지원은 2013년부터, ASEAN PATENTSCOPE의 개발 지원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2021년도에는 아프리카 말라위, 태국, 아프리카의 광역 특허청인 OAPI에서 전자화 프로젝트를 실시지원
 - 2022년도에는 에스와티니에서 데이터 검증 등 프로젝트를 지원
- 2023년도에는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지역에서의 전자화 프로젝트진행

4) 지식재산 활용 지원

(1) 브랜딩 지원

- FIT Japan IP Global은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인들이 지적재산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전통적인 지역산품 브랜드화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유엔이 내걸고자 하는 목표인 SDGs의 달성에 기여
- 지금까지 케냐의 타이타 바구니, 보츠와나의 초베 바구니, 가나의 불가 바구니의 브랜드화를 지원
- * 케냐의 타이타 바구니의 브랜딩 프로젝트에서는 케냐 산업재산권 기관과 협력하여 동군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사이잘 마제 바구니의 단체 상표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
- **등록된 단체상표의 관리자가 되는 조합의 설립, 단체상표 로고마크의 작성, 단체상표의 사용규칙의 작성에 협력한 것 외에 바구니의 품질기준을 작성하여 일정한 품질을 충족한 제품에만 단체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등의 룰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400명 이상의 바스켓의 뜨개질수에 대해서,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바스켓 만들기를 위한 트레이닝을 실시
- ***보츠와나에서는 보츠와나의 회사 및 지식재산 기관과 협력하여 야자 잎으로 짠 전통적인 초베 바구니를 지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 지원(2019년부터 2021년) 하여 초베 바구니 장인 협동 조합이 초베 바구니의 단체 상표를 보츠와나에서 취득



(2) 기술·이노베이션 지원 센터(TISC: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

- 기술·이노베이션 지원 센터(TISC: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는 기술 정보, 과학 및 기술 문헌, 검색 툴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촉진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혁신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 현재 90개국에서 1,400개 이상의 거점(특허청, 대학, 연구센터, 테크노로지파크 등)에 설치되어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특허출원 및 특허 명세서 작성 지원, 상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FIT Japan IP Global은 각 지역에서 TISC의 네트워크 형성과 TISC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 2023년 5월에는 알제리에서 아랍 지역 TISC 네트워크 회의, 같은 해 9월에는 카메룬에서 OAPI 회원국 TISC 네트워크 회의 개최

2. 국제 연수 지원

- 일본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 30명(2024년도)으로 구성된 국제연수지도교관을 중심으로 ASEAN을 비롯한 신흥국 심사관에 대한 특허심사실무 연수를 제공
 - 국제 연수 지도 교관은 신흥국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 라이브 강의에 의해 신흥국 심사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면서 특허 심사 실무를 지도
 - 연수 내용은, 신흥국 수요, 지식재산 역량에 따른 수준별 심사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IPR-E러닝 코스 제공⁸⁾
- Substantive Examination (IP Office's Business Process) (2024)
- JPO Trial and Appeal Systems (2023)
- Eligibility for Patent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2022)
- Amendments (2021)
- Utilization of JPO's examination results by J-PlatPat (2021)
- Utilization of Examination Results of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2021)
- Writing of Reasons for Refusal (2021)
- Requirements for Description (2017)

⁸⁾<https://www.jpo.go.jp/e/news/kokusai/developing/training/e-learning/index.html>

- Requirements for Claims (2017)
- Novelty (2017)
- Inventive Step (2017)
- Examination Procedure (2016)
- Patent Classification and Search key (2016)
- Prior Art Search (Entry level) (2016)
- Anti-Counterfeiting Measures (2015)
- Industrial Property Rights System in Japan (2014)

3. 개도국 지식재산 연수⁹⁾ (2023)

1) 연수지원

- 일본국 특허청(JPO)은, 1996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상국 등에 대한 인재 육성 사업(JPO/IPR 연수의 제공, 장기 연구생의 초청 등)를 실시
 - 2022년도까지의 27년간에 105개국 5지역으로부터 7,690명의 연수생이 JPO가 실시하는 지적 재산 연수를 수료
 - JPO는 연수생 간 및 일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각 개발 도상국 등의 지식 재산 제도의 현재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기 연구생의 연구 논문 게재

2) 장기 연구생 지원 (논문 발표 등)

- 연구생은 장기간(약 4개월) 일본에 체재해, 자국 업무에 있어서의 과제 인식에 기초한 연구 테마를 설정해, 본 사업 담당자의 지도와 외부 전문가의 어드바이스에 의해, 자국의 장래의 지식재산 발전을 향한 제언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

9) <https://www.jpo.go.jp/news/kokusai/developing/training/2023.html>

〈표〉 2023년 연수프로 그램

	2023년 연수프로그램	구분
상표	JPO/IPR 연수 마드프로 가맹 지원 코스 실시 기간:2023년 6월 27일~7월 4일	
특허	JPO/IPR 연수 특허 심사(기초) 코스 실시 기간:2023년 7월 6일~7월 13일	
특허	JPO/IPR 연수 관리자용 특허심사 매니지먼트 코스 실시 기간:2023년 7월 18일~7월 24일	
상표	JPO/IPR 연수 상표 전문 실무자 코스 실시 기간:2023년 8월 1일~8월 30일	
교육	JPO/IPR 연수 JPO/IPR 연수 지재 보급 계발 코스 실시 기간:2023년 8월 15일~8월 21일	
특허	JPO/IPR 연수 특허 전문 실무자 코스 실시 기간:2023년 8월 23일~10월 5일	
교육	JPO/IPR 연수 IP 트레이너스 코스 실시 기간:2023년 8월 25일~9월 26일	
특허	JPO/IPR 연수 중동·아프리카용 특허 심사 코스 실시 기간:2023년 9월 7일~9월 14일	
특허	JPO/IPR 연수 특허 심사 실천 연수(OPET) 코스 실시 기간:2023년 10월 16일~12월 8일	
정보화	JPO/IPR 연수 정보화 코스 실시 기간:2023년 10월 17일~10월 20일	
보호	JPO/IPR 연수 실무자용 모방품 대책 코스 실시 기간:2023년 10월 25일~11월 1일	
기술이전	JPO/IPR 연수 산학 제휴·기술 이전 코스 실시 기간:2023년 11월 7일~11월 16일	
특허	JPO/IPR 연수 심판 코스 실시 기간:2023년 12월 7일~12월 13일	
디자인	JPO/IPR 연수 의장 종합 코스 실시 기간:2024년 1월 16일~1월 23일	
상표	JPO/IPR 연수 상표실체심사코스 실시 기간:2024년 1월 31일~2월 8일	
특허	JPO/IPR 연수 중남미 특정 기술 특허 심사 코스 실시 기간:2024년 2월 14일~2월 21일	

4. JICA 협력

(1) 인도네시아 지원

- 현지 지식재산제도 정비 지원, 인재육성 등 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JPO 직원을 장기전문가로 인도네시아 특허청(DGIP)에 파견하여 인하우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 현재는 특허 심사관 1명을 파견하여 특허 심사 실무 지원, 특허 심사 기준의 개정, 특허 심사관의 능력 향상, 특허 심사의 품질 관리 등을 지원 하고 있음

<그림> 인도네시아에서 자이카 활동



(2) 베트남 지원¹⁰⁾

- 2021년 3월부터 「공업 소유권의 심사 능력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장기 전문가로서 JPO로부터 특허 심사관 1명을 베트남 국가 특허청에 파견
 - 특허 심사 기준의 개정, 특허 심사의 품질 관리에 관한 문서의 작성 및 파일럿 활동, 특허 심사관의 능력·스킬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세미나나 워크숍 등 지원

- 1-1. 베트남의 기존 법률과 운영에 준거하도록 개정된 특허심사기준을 초안하고, 심사 기준에 최신기술에 관한 기재를 포함
- 1-2. 개정된 특허심사기준에 관하여 내부용 및 외부용으로 2,3일의 세미나를 실시
- 1-3. 개정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번역·공개
- 2-1. 특허심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
- 2-2. 특허심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
- 2-3. 특허심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에 준거한 복수의 파일럿 활동을 실시
- 3-1. IP Viet Nam의 심사관 특허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 일본측 투입
 - 전문가 파견(약 24M, 2년) (특허 심사 업무)
 - 연수원 수용 : 없음
 - 장비 공여: 없음

10) <https://www.jica.go.jp/Resource/project/vietnam/059/outline/index.html>

○ 베트남 투입

- 협력 파트너의 배치
-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서비스나 시설, 현지 경비의 제공
- 사무 공간 제공, 관련 자료 및 정보, 현지 사업비 등
- 현지 파트너 보상비(베트남에서의 교통비 및 관련 여비)
- 특허 심사 가이드 라인의 공개에 드는 비용
- 기타 경상 지출

○ 활동성과

- 특허심사기준이 개정
- 특허심사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문서(체크 리스트, 사례집 등)이 작성
- 특허심사관의 스킬과 능력 향상

2. 지역별 지식재산 협의체

1) ASEAN IP 협의체

- ASEAN 국가간 지식재산 협력은 1995년 서명하였고, AWGIPC라는 실무 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 AWGIPC는 ASEAN 산하 기구로 ASEAN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진보와 ASEAN 회원국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립을 목표로 1996년에 설립
 - 현재 AWGIPC 회원국은 ASEAN 10 개국으로 구성 :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아세한 지식재산 행동계획(2016~2025)의 4대 목표를 수립
 - 국가별 특허청 역량 강화 및 해당 지역 내 IP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견고한 ASEAN IP 시스템 구축
 - 지역 IP 플랫폼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ASEAN 경제 공동체(AEC) 강화 기여
 - 확장적이고 포괄적인 ASEAN IP 생태계의 발전
 - 지리적 이점과 전통문화를 통한 가치 창출 및 상업화 증진을 위한 지역 메커니즘 마련
- AWGIPC는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업무 분담 및 세부 사항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위 기관으로 상표부서(Tast Force on Trademark), ASEAN 특허심사협력부서(ASEAN Task Force o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ASEAN IP 침해 대응 전문가 네트워크(ANIEE; ASEAN Network of IP Enforcement Experts) 등이 있음
 - 이 기관들을 통해 IP 가치 창출, IP의 상업화 및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지역 정책 및 제도적 기틀 마련, 지역 내 IP 협력 증진, 지식재산권 관련 인적자원개발 및 기관 설립, 대중 인식 제고, 지역 내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림> IP database에 등록된 특허¹¹⁾

Flag	Country	Patents	Designs	Trademarks
	Brunei	1,651	199	57,844
	Cambodia	1,486	1,229	137,788
	Indonesia	194,051	89,854	1,694,830
	Lao PDR	160	538	64,898
	Malaysia	207,071	39,187	1,050,381
	Myanmar	0	49	6,009
	Philippines	72,174	20,361	612,522
	Singapore	232,612	31,192	562,365
	Thailand	178,632	79,648	1,203,945
	Viet Nam	111,512	54,548	794,615

○ 특허심사협력(ASPEC, 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은 회원국간 특허심사 업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심사역량이 낮은 국가에서는 심사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에서 동일한 발명의 특허권 확보를 원하는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취지로, 아세안 회원국들의 특허청들 간 특허심사 업무를 공유하여 특허 심사 시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

- 출원인이 아세안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청구하면, 후발 심사 특허청은 선발 심사 특허청에서 발행된 심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 또는 견해서(Written Opinion)를 후발 심사 특허청의 심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¹²⁾.

- 후발 심사 특허청은 선발 심사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지만, 후발 심사 특허청이 중복되는 특허 조사 및/또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후발 심사 특허청의 특허 조사 및/또는 심사에 대한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출원인은 후발 심사 특허청으로부터 보다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 통계에 따르면,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 청구 후 첫 번째 거절 이유 통지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8개월이며, 특허 등록률은 99.3% 임

○ 싱가포르 특허청은 아세안 지역의 다른 특허청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심사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출원인들이 싱가포르 특허청을 선발 심사 특허청으로 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에 싱가포르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한

11) <https://ip-register.aseanip.org/wopublish-search/public/home?1>

12)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22&no=5074>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모든 특허청들에서 영어로 진행되며,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 청구에 대한 별도의 관납료는 부과되지 않음
- 출원인은 심사 청구에 대한 관납료만 납부, 출원인은 후발 심사 특허청에서 최종 등록 결정 또는 최종 거절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특허 출원 중 언제든지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을 청구할 수 있음

3) GCC 특허청(Gulf Cooperation council)

- GCC 회원국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및 아랍 에미리트 연방(이하 “UAE”) 이 가입되어 있음
- GCC 특허가 부여되면 모든 회원국에 효력이 미치는 장점이 있었으나, 2021 특허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국가(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에서만 효력을 미침
- GCC 특허청은 2021년 1월 6일 신규 특허 출원 접수를 중지한다는 사실을 발표
- 계속중인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계속되며 특허가 부여된 경우에는 전 회원국에서 효력을 미치며, 이미 부여된 특허권은 권리기간 만료까지 가맹 각국에서 유효

<표> 개정된 특허규칙

- (1) GCC특허청은 GCC의 어느 나라의 요청에 따라 특허출원의 접수, 심사, 특허 부여에 책임을 진다(1조의2제1항).
- (2) 상기 요청은 GCC 회원국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1조의2 제1항).
- (3) GCC 회원국은 특허출원의 접수, 심사, 특허 부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GCC 특허청에 요청하는 경우, GCC 사무국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상기 요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는 각국 특허법이 적용된다(1조의2제2항).

- 출원인은 쿠웨이트, 바레인 및 카타르를 포함하여 회원국에 대한 파리 루트에서 직접 출원하거나 PCT 루트를 통해 권리화를 받을 수 있음

4) 아프리카 지식재산 기구

(1) 아프리카 지식재산 기구

- 아프리카는 국가별로 영어권 국가와 불어권 국가로 나뉘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기구도 두 개의 기구 존재.

- ARIPO는 아프리카의 15개 영어권 국가들로 구성돼 있고, OAPI는 16개 불어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출원접수 및 심사, 등록을 대행하고 있음

* ARIPO : Afric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OAPI : Organisation de la Africaine Propriete Intellectuelle

	
(설립년도) 1976년 (사무소) 짐바브웨의 히라레	(설립년도) 1977년 (사무소) 카메룬 야운데

- 두 기구는 WIPO를 비롯해서 유럽특허청(EPO), 미국특허청 등 선진 각국 특허청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지재권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 ARIPO와 OAPI, 아프리카 연합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유럽지식재산청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 증진 및 유럽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AfrIPI(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 Innovation)를 2020년 출범 AfrIPI는 아프리카의 지역통합 및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함

- ARIPO는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의 지식재산기구이며, 각료 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로 구성되어 지식재산 업무 수행

* ARIPO 가맹국 : 보츠와나, 갬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남미비아, 르완다, 세라리온,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및 짐바브웨의 19개 국가

- ARIPO 조직은 각료위원회(The Council of Ministers), 행정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uncil), 사무국(The Secretariat) 및 항소위원회(The Board of Appeal)의 4개 기관으로 구성

〈ARIPO의 역할〉

- 산업소유권법 및 그와 관련된 문제의 조화와 발전을 회원 및 지역 전체의 필요에 맞게 촉진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회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업소유권 활동의 조정, 조화 및 개발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공동 서비스 또는 기관을 설립
- 산업재산권법 관리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산업재산권 문제에 관한 회의, 세미나 및 기타 회의를 조직
- 산업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경험, 연구 및 연구의 교환을 촉진
-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공통된 견해와 접근 방식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기술의 획득 및 개발에 있어 회원사를 적절하게 지원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바람직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일을 수행

○ 2010년 아프리카 문화 보존을 위해 OAPI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전통지식 및 전통 문화의 보호를 위한 Swakopmund 의정서」 채택

- WIPO가 정부 간 지식재산권 · 유전자원 · 전통지식 · 전통문화위원회(IGC)에서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법제도 마련을 지원

○ EPO와 ARIPO는 ARIPO 회원국 및 앙골라, 에티오피아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 훈련 ARPET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음

* ARPET : ARIPO Patent Examination Training, ARPET

- ARPET는 각국 심사관들에게 적시에 고품질의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선행기술 조사와 심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생들이 각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을 보호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Voluntary Registra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등록제도 추진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 간 체결되는 최초의 의정서로, 지역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자발적 등록을 장려하여 아프리카의 창작 산업을 보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유지 · 관리 예정임

○ EC는 아프리카와 포스트-코토누 협정(Post-Cotonou Agreement)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대해 협력을 하고 있음

- 포스트-코토누 협정 제12조는 ‘지식재산’을 규정하고 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 집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 지식재산권의 보호, 혁신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수립 등을 제안

○ 2008년부터 WIPO, ARIPO 및 일본 특허청이 공동으로 아프리카 대학(AU)에 ‘지식

재산 석사프로그램(MIP)’을 설립하여 교육하고 있음

- MIP 과정의 교육생들은 초기에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아프리카 경제를 주도하는 중소기업 청년들로 점차적으로 관심 증대되고 있음
- OAPI는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의 지식재산기구로 행정위원회 및 고등항소위원회 등을 두고 지식재산 관련 업무 수행하고 있음

* OAPI 가맹국 : 베닌,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에콰토리알 기니아, 가봉, 기니아, 기니아 비사우, 아이보리 코스트, 말리, 모리타니아, 나이지, 세네갈 및 토고의 16개 국가로 구성

- OAPI 조직은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고등항소위원회(High Commission of Appeal), 사무국(Directorate General)으로 구성
- 행정 위원회는 OAPI 회원국 대표로 구성. 역할로는 계약 이행을 위한 규정 작성, 재정 규정 및 지불 수수료 설정, 규정 이행 감독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임시 위원회 구성
- 고등 항소 위원회는 회원국이 지정한 대표자 명단에서 추첨을 통해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 권한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 소유권 신청 거부, 보호 기간 유지 또는 연장 요청 거부, 복권 요청 거부 및 반대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결을 진행
-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지휘 하에 조직의 집행 업무 역할조직의 일상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계약 조항에서 발생하는 기타 작업을 진행
- OAPI는 PCT 및 파리조약, WIPO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맹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반드시 OAPI 등록을 통해서만 가능
- 상품류 구분에 관한 42개 국제분류제도를 이용하며, 상품과 서비스는 별도의 상표로 출원해야 됨

* 2008년 ‘아프리카의 지식재산 분야 지원에 관한 회의’에서 일본 특허청, WIPO, ARIPO 및 OAPI 등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원 펀드를 설립하였으며, 2013년 KOICA도 OAPI 공무원을 대상으로 IP 시스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OAPI의 역할>

-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통일된 시스템과 조직의 회원국이 가입하고 산업재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분야의 국제 협약 조항에서 파생된 공통 행정 절차를 구현하고 적용
- 문화 및 사회적 가치의 표현으로서 문학 및 예술 재산 보호 증진에 기여
-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회원국에서 국가 저자 협회의 창설을 장려
- 문학 및 예술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중앙집중화, 조정 및 보급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계약 당사국에 전달
- 특히 지식재산권 및 관련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
- 지식재산권 교육을 제공
- 회원국이 위임할 수 있는 목표와 관련된 기타 임무를 수행

(2)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현황

- (전통지식의 보호) ARIPO의 하라레 의정서, 케냐의 산업재산권법, 남아프리카의 특허법 등에 구두로 전해지는 전통지식이라도 최소한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을 막는 규정이 존재
 -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연합 체제 하의 전통지식 및 민속 전승의 표현 보호에 대한 스와코프문드 의정서’에는 전통지식의 보호와 민속 전승 표현의 보호에 대해 규정이 있음
 - 나고야 의정서에는 전통지식 등의 소유자의 권리 중 이용 허락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전통지식의 사용 범위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생물자원의 보호)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생물자원 보호는 나고야 의정서*에 의존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자체 연구소 설립하고 있음
 - 가나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기술, 화장품, 향수, 식음료, 제약 산업의 유전자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식물유전자원연구소(CSIR-PGRRI)를 설립, 산하 국립유전자은행 설립

* 나고야 의정서 :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한 부속서로서 체결된 의정서로,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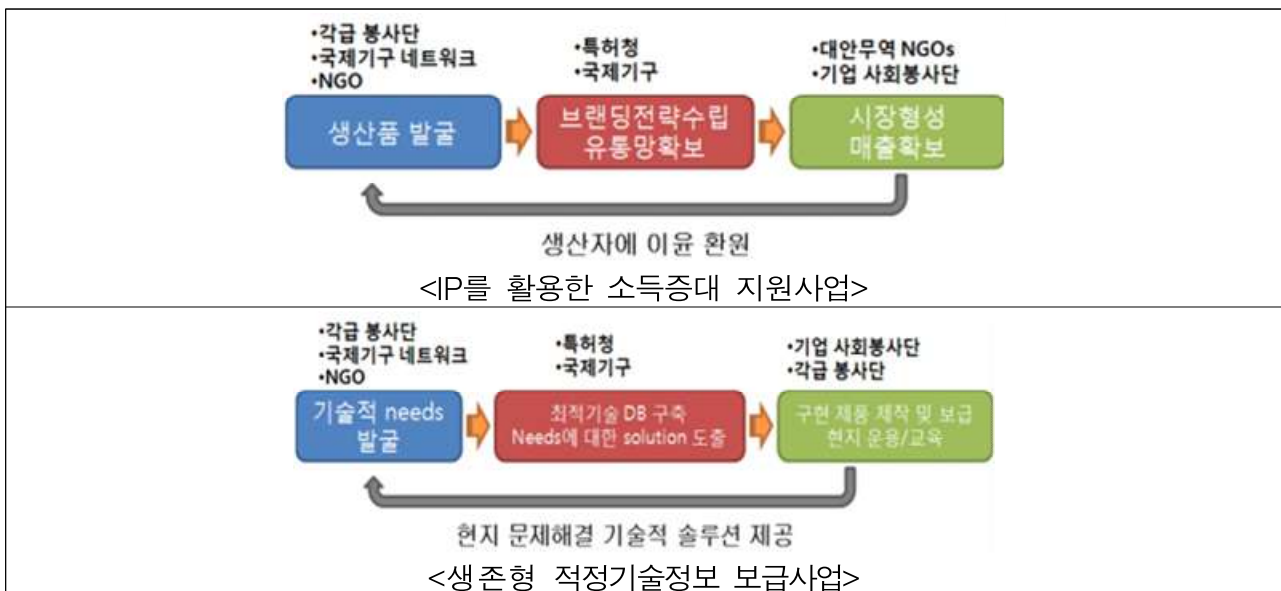
(3) 아프리카 국가와 한국의 지식재산 협력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농업기술, 브랜드 개발 지원

- (과기부) 특허정보 분석컨설팅을 제공하여, 개도국과의 공동 연구의 효율성 제고(중복투자 방지 등) 및 방법론 전수('21년~)
- (농진청)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농업 기술과 브랜드를 개발·보급('23년)
- (특허청)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적정기술·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 개도국 삶의 질 개선·소득증대를 위해 IP를 활용하여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적정기술과 관련 브랜드 개발·보급 하고 있음

- IP를 활용한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현지에서 local community의 상품화 가능 생산품 발굴,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존형 적정기술 보급사업은 개도국 현지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기술에 대한 needs를 발굴,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재권(기술정보)을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특허청은 2013년 OAPI에 IP 시스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음

<브랜드 지원사업 리스트>

년도	국가(상품)	사업 개요	브랜드
2010	차드 (건망고)	사업 지역 : N'Djamena 협력 기관 : 차드 굿네이버스	
2014	가나 (양봉)	사업 지역 : 가나 Volta 협력 기관 : 볼타지역양봉협회(VORAB)	
2020	에티오피아 (벌꿀인증마크 및 제품 브랜드)	사업 지역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협력 기관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정부	

-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인 ‘특허넷’은 ARIPO의 특허정보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2013년 특허넷* 구축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2년간 580만불 투입하여 2015년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특허넷을 통해 특허 출원·접수의 전자화, 선행기술 DB 구축 및 검색의 자동화, 온라인 수수료 납부 등 가능

(4)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식재산 ODA 협력 방안

- 일본은 일본 특허청과 WIPO 간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및 최빈국 개발을 지원하는 신탁기금(Fund-in -Trust, FIT) 수립을 추진
 - 아프리카 고위급 정책 대화와 같은 고위급 정책 협의체 구성
 - 특허청(IP Office)의 현대화를 지원, 아프리카 국가 특허청이 ICT 시스템 및 데이터 베이스 등 인프라를 갖추으로써 더 많은 IP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 일본 FIT(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특허청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각 특허청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출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일본 FIT(아프리카)의 IP 사무소 현대화 프로젝트

연도	지원국(기관)
데이터 캡처(PDF 전환)	
2012	모리셔스
2013	잠바브웨
2014	나이지리아
2015	보츠와나, 잔지바르
2016	나이지리아, 나미비아(진행 중), 잠비아(진행 중)
2017	에스와티니(진행 중)
2018	우간다(진행 중)
디지털화	
2013	이디오피아
2014	OAPI
2015	ARIPO, 케냐, 잠바브웨
2016	이집트, OAPI, 보츠와나, 말라위, 모잠비크

출처 : 「KIPO-WIPO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2020), 특허청 · 지식재산연구원

IV. 시사점

1) 배경

다수의 개도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심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며, 이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낙후된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및 심사 시스템은 비효율적 프로세스, 수작업 중심의 업무 방식, 심사 적체를 야기함

예를 들어, 브라질 및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자체 검색시스템에서는 해외데이터 검색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해외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 검색 사이트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공개된 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심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에 한계가 있음

검색시스템에 이미지 검색기능이 부재하여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시에 심사관 육안을 통해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전체 검색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답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심사보고서를 로컬 PC에서 수기 입력을 통해 생성하거나 심사관이 상표 방식심사 단계에서 수기로 비엔나 분류 코드를 지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지연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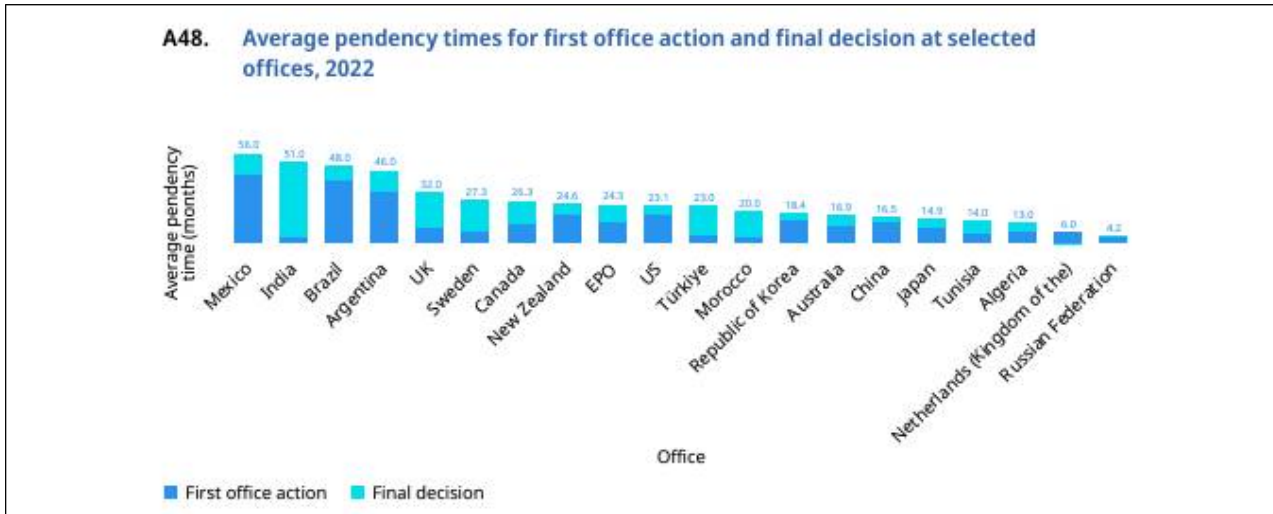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신청 건수가 많아 심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함, 결과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신뢰도가 낮아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특허정보원의 2019/20 브라질 KSP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출원일부터 심사청구까지 평균적으로 약 2.5년 정도 소요되며, 심사청구 시 바로 실체심사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약 5~8년간의 적체(backlog) 기간이 존재, 심사청구일부터 실체심사 완료까지 현재 평균적으로 약 6.5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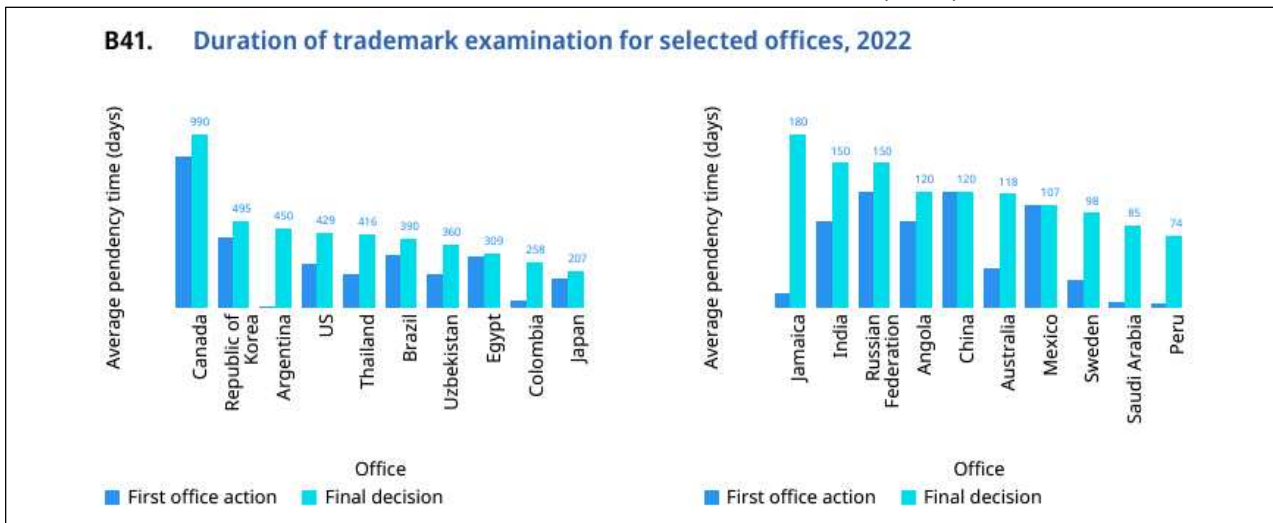
태국과 같은 일부 중소득 국가에서는 특허 심사 완료까지 평균 915일이 소요되며(WIPO World IP Indicators 2023), 이는 기업이 신속하게 혁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

이런 환경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현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DB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FDI 간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혁신 지수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Minsoo Lee and Donghyun Park, 2013).

<주요 특허청의 특허 심사 평균 소요 기간(2022)>



<주요 특허청의 상표 심사 소요 기간(2022)>



※ 출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WIPO, 2023)

※ Pendency times for first office action: 심사 요청일로부터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개월 및 일수)

※ Pendency times for final decision: 심사 요청일로부터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개월 및 일수)

위와 같이 WIPO의 IP 주요 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보고서에서 심사 지연(pendency) 관련하여 기재된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 되었음

데이터 수집은 WIPO Statistics DB에서 최근 5년(2018~2022년)의 특허 출원 건수, 특허 심사관 수, 그리고 심사청구부터 1차 심사까지 소요된 시간(Average pendency from request for examination to the first office action)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5년 평균을 계산하였음

키르기스스탄, 칠레 등 5년간의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개도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상표 출원이 특허 출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WIPO Statistics DB에서 상표 관련 심사 지연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다.

심사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출원 건수와 심사관 수를 바탕으로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출원 건수를 도출함

<주요 특허청의 심사 통계>

국가	출원 건수 (최근 5년 평균)	특허 심사관 수 (최근 5년 평균)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출원 건수	1차 심사 결과까지 소요 시간(일수)
한국	226,271	932	243	352
멕시코	15,889	123	130	554
베트남	7,705	68	113	1,086
인도	59,819	590	101	546
UAE	2,171	22	100	1,180
브라질	24,716	311	79	1,674
태국	8,139	107	76	1,079
우즈베키스탄	624	10	65	60
페루	1,286	29	44	913
몽골	171	4	39	263
이집트	2,157	100	22	468
조지아	233	18	13	450

※ 출처: WIPO Statistics

한국은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차 심사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출원 건수가 한국보다 약 1/4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소요 시간이 의미 있게 짧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베트남과 UAE는 1인당 처리해야 할 출원 건수와 심사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모두 높은 국가이며, 브라질과 태국은 1인당 처리해야 할 출원 건수가 연간 100건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1차 심사 결과까지 소요되는 일수가 1,000일 이상이 소요, 페루는 1인당 처리해야 할 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1차 심사 결과까지 소요 시간은 거의 1,000일에 달하는 수준임

위의 분석 결과에서 해당 국가들은 심사 효율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한국의 전문 심사 역량을 보유한 심사관을 파견하여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현지 심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디지털 인프라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심사 ODA 사업을 추진한다면, 심사 지연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2) 사업 내용

동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심사 ODA 사업은 수원국에 종합적인 심사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은 크게 심사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 심사 시스템 구축, 심사 역량 강화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짐

첫째, 심사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을 통해 국가별 지식재산권 심사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병목현상 개선을 통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함, 한국의 심사관이 한국의 심사 절차를 공유하고, 수원국 특허청의 심사 프로세스와 추세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수원국 현황에 최적화된 심사 절차 수립을 지원한다. 심사 과정은 각국의 특허청마다 다르게 진행되므로, 한국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수원국의 행정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함

둘째, 심사 시스템 구축은 수작업 위주의 심사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임, 심사관용 검색시스템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 과정 및 업무 배분을 자동화 추진,

예를 들어, 개도국은 다수의 해외 검색 사이트 활용, 심사보고서 수기 작성, 이미지 육안 비교 등으로 인해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미지검색, 화학식검색, 전문검색, 검색식 재활용, 해외 DB 접근경로 일원화, 인용참증 등의 고도화된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도입이 필요

이를 통해 심사업무의 편의성을 증대하여 심사업무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특히, AI 이미지 검색과 AI 분류코드 추천 기술이 접목된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 지식재산권의 품질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심사 역량 강화는 수원국 심사관의 심사 역량강화를 목표로 함, 한국의 심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심사관들에게 심사 스킬 및 최신 심사 트렌드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 또한, 파견 심사관과 현지 심사관 간 협력 심사를 통해 실무 경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

동 사업은 개도국의 심사 절차 최적화, 심사관 검색시스템 및 행정시스템 구축,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심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수원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3) 기대효과

(1) 국제적 수준의 고품질 심사 달성

개도국의 기존 심사 체계는 대부분 수작업 위주의 절차로 운영되거나 노후화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심사 효율이 낮고 심사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숙련된 한국 심사관을 파견하여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심사관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자동화와 업무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또한 모든 심사 이력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투명성이 강화되고, 심사 신청자가 심사 진행 상태를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크게 향상

디지털 인프라 외에도 현지 심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 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이는 심사 지연과 부실 심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심사관 교육과 전문 인력 파견을 통해 최신 지식과 실무 역량을 전수하면, 현지 심사관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공동 심사 수행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축적된 역량은 해당 국가가 자립적인 지식재산권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수원국 특허청 자체 심사 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수원국 특허청의 고품질 심사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음

(2) 수원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신뢰수준 강화

신속·정확·투명한 지식재산권 심사는 시의적절한 권리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개선은 해당 국가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며, 외국 기업들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신뢰하게 되어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개선은 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심사 ODA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제언

앞서 제시한 심사 ODA 사업은 해당국의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hardware)과 인적 자원(software)을 함께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임

ODA 사업 발굴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점은 수원국의 정확한 수요와 재원 기관의 정책적 부합성임, 수원국에 심사 ODA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수원국의 심사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다면, 재원 기관의 국가지원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심사 ODA 사업의 분야는 공공행정, 공무원 역량 강화, 디지털 정부 섹터 등에 포함될 것임, 따라서 KOICA 또는 MDB 등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해당국에 대해 수립한 국가지원전략에 해당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있음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을 제안함

첫째, 한국 특허청의 자체 ODA 예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 KOICA, EDCF, MDB 등의 외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행정 절차를 요구하며, 제안 시점부터 착수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므로, 특허청의 ODA 예산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적정기술 또는 WIPO 신탁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체 ODA 예산을 확보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ODA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임

둘째, 특허청의 자체 ODA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KOICA 및 EDCF 등의 한국 재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한국 재원 활용 시 의사소통과 자료 확보가 더 명확하고 신속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EDCF는 보통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수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서는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이 적합할 수 있음.

셋째, 해외 재원 활용 시 MDB 신탁기금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WB과 같은 글로벌 개발은행 또는 수원국이 속한 권역의 지역개발은행의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한국신탁기금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편이며, 대부분의 신탁기금이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사업 선정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신탁기금의 지원금액은 평균 50~1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사업기획 시점부터 MDB의 한국신탁기금과 차관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결론적으로,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특허청은 심사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수원국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은 해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시스템 구축 사례 비교표>

구분	파라과이	UAE	이집트	ARIPO	아제르바이잔	몽골
사업명	파라과이 지식재산 관리강화 사업 (‘19-’21/52.5만불)	UAE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6-’19/450만불)	이집트 지식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사업 (‘19-’23/290만불)	짐바브웨/ARIPO 특허행정 전산인프라 개선사업 (‘13-’15/580만불)	아제르바이잔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지원사업 (‘11-’13/420만불)	몽골 지적재산권 현대화사업 (‘10-’12/310만불)
발주기관	미주개발은행(IDB)	UAE 경제부	KOICA	KOICA	KOICA	KOICA
수행기관	한국특허정보원	KIPI 컨소시엄 (한국특허정보원, ㈜시리우스소프트)	(주)시리우스소프트	(주)시리우스소프트	(주)시리우스소프트	LG CNS
사업내용 (구축내용)	- 문서전자화시스템 - Paperless 시스템	- 특허행정시스템 - 대민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	- 전자출원시스템 - 특허검색시스템	- 지재권 행정자동화 시스템 - 데이터 교환 모듈 시스템 -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	- 행정자동화시스템 - 대국민 통합검색시스템 - 지재권 교육지원 시스템	특허정보시스템
심사 관련 내용	X	- 심사관용 검색 - 심사업무 배분	심사관용 검색	- 심사업무 자동화 - 심사관용 검색	- 심사업무 자동화 - 심사관용 검색	- 심사업무 자동화 - 심사관용 검색
심사 ODA 연계 가능성	상	하	중	하	하	하

※ 사업예산은 시스템 구축 외에 역량강화 및 기자재 조달 등이 포함된 총 금액

<참고문헌>

□ 한국어 자료

국무조정실. (2024). 2024년 국가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대외경제협력기금. (202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안내책자.

이미정, 강영웅, 엄서연, & 오승수. (2021). ADB 공공조달 입찰 가이드북. 한국조달연구원.

이미정, 강영웅, 이해미, & 홍수빈. (2021). WB 공공조달 입찰 가이드북. 한국조달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년 5월 4일). 미주 개발 은행 (IDB) 연계 한국 보건의료 협력 사업 현황 및 시사점. 보건산업 브리프, (348).

한국에너지공단. (2020). ADB 입찰 가이드라인.

KOTRA. (2016). 다자개발은행 채원조달 방법과 절차. KOTRA.

□ 영어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2023). Annual report 2023.

Lee, M., & Park, D. (2013, Ju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quality of institu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developing Asia(No. 354).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23). Annual report 202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2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3.

World Bank. (2023). Annual report 2023.

World Bank. (2023). Trust Fund Annual report 202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Patent office operations: Application processing times, examination capacity and examination outcomes.

한국특허정보원. (2021).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Final Report Brazil: Policy consultation for 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improvement in Brazil. 기획재정부, KOTRA.

□ 웹사이트

Asian Development Bank. (n.d.). Public sector financing: Project cycle.
<https://www.adb.org/what-we-do/public-sector-financing/project-cycle#accordion-0-1>

Focus 2030. (2023). Slight increase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23.
<https://focus2030.org/Slight-increase-in-Official-Development-Assistance-in-2023>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n.d.). How projects are made.
<https://www.iadb.org/en/projects/how-projects-are-made>

KOICA. (n.d.). KOICA의 사업과 활동.
https://www.koica.go.kr/koica_kr/941/subview.do

KOICA. (n.d.). KOICA의 정책 및 전략.
https://www.koica.go.kr/koica_kr/901/subview.d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n.d.). IP statistics: Key indicators.
<https://www3.wipo.int/ipstats/key-search/indicator>